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631-01

---

# 반려동물용품산업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연구기관 : 한국애견협회

# 목 차

<b>I. 서론</b>	<b>p.1</b>
1. 연구배경1 -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	· · · · p.1
2. 연구배경2 - 국내 실정이 반영된 반려동물용품 안전인증기준 및 제도 필요	· · · · p.1
3. 연구배경3 - 안전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 · · p.1
4. 연구방향	
<b>II. 연구 내용</b>	<b>p.3</b>
1. 반려동물용품의 현황 및 실태조사	· · · · p.3
가.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 파악	· · · · p.3
나. 국내 반려동물용품산업 시장 규모 및 현황 파악	· · · · p.9
다.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실태조사	· · · · p.14
라. 동물용품 관련 연관산업 중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항목 분류 현황	· · · · p.32
2.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조사 마련	· · · · p.35
가. 국내 반려동물용품 다양화 및 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관리 실태 파악	· · · · p.35
3. 반려동물용품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 · · · p.51
가.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민원 접수처 및 접수 현황	· · · · p.51
나.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 · · p.53
다.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한국소비자원)	· · · · p.53
4. 반려동물용품 관련 해외사례 조사	· · · · p.56
가. 해외 반려동물산업 시장 현황 및 관리체계(인증, 품질기준 등) 파악	· · · · p.56
나.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해외 사용실태 및 안전관리 기준 조사	· · · · p.62
5.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개선 및 산업육성을 지원방안	· · · · p.66
가. 반려동물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안전 관리 및 인증기준 마련	· · · · p.66
나. 반려동물용품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 · · · p.79
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	· · · · p.86
<b>III. 종합의견</b>	<b>p.89</b>
<b>참고자료</b>	<b>p.90</b>
<b>*별지1</b>	<b>p.92</b>
<b>*별지2</b>	<b>p.99</b>

## 표 목 차

표 5.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	p.3
표 2. 해양수산부에서 분류한 동물용의약품(수산용)	p.6
표 3.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반려동물관리사 1급 교육과정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p.8
표 4. 강아지대통령(소매업체)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p.8
표 5. 펫클럽(소매업체)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p.8
표 6. 반려동물 안전용품(목줄, 하네스 등) 파손 관련 기사	p.14
표 7. 2014~2018년 5년간 개물림 사고 빈도수(소방청)	p.14
표 8. 2016년~2018년 연령별 개 물림사고 수(소방청)	p.14
표 9. 입마개 종류	p.15
표 10. 입마개 소재에 의한 분류	p.15
표 11. 가슴줄 종류	p.16
표 12. 소재에 의한 가슴줄 분류	p.16
표 13. 목줄 종류	p.16
표 14. 소재에 의한 목줄 분류	p.16
표 15.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안전성 검사 실시여부를 명시 한 목줄(하네스) 용품 종류	p.18
표 16. 2015년~2018년 서울시 반려견 소음 민원 발생 건 (KBS뉴스, 2019)	p.29
표 17. 전기충격 짚음방지 기 형태	p.20
표 18. 경찰용 전자충격기와 반려견용 전기충격 짚음방지 기에서 사용되는 평균 전압 비교	p.20
표 19. 다양한 짚음방지 기 형태	p.29
표 20. KC등록 개짚음방지 기 제품 목록	p.30
표 21.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사료(제조, 도매)	p.32
표 22.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일반 공산품 용품, 사료소매	p.33
표 23.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의약품(제조, 도매, 소매)	p.34
표 24. 반려동물용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p.44
표 25.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의 반려동물용 공산품 분류체계	p.44
표 26.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의 반려동물 안전용품 안전요건	p.45
표 27. 품목별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 현황	p.45
표 28.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의 검사대상 용품 분류체계	p.45
표 29.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와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간 시험항목, 기준규격, 검사대상 비교(의약외품 제외)	p.46
표 30. 반려동물 제품/용품 관련 피해유형 분류	p.52
표 3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의 분류기준	p.54
표 3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p.54
표 33.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동물사료)	p.54

표 34. 해외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을 인증하는 기관	· · · · ·	p.61
표 35.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화	· · · · ·	p.66
표 36. 반려동물 의류 안전요건	· · · · ·	p.67
표 37. 반려동물 침구류 안전요건	· · · · ·	p.68
표 38. 반려동물 안전용품 안전요건	· · · · ·	p.69
표 39. 반려동물 놀이용품 안전요건	· · · · ·	p.70
표 40. 반려동물 위생용품-고양이용 모래 안전요건	· · · · ·	p.70
표 41. 반려동물 위생용품-배변패드 안전요건	· · · · ·	p.71
표 42. 반려동물 위생용품-기저귀 안전요건	· · · · ·	p.72
표 43. 반려동물 소품 - 합성수지제 제품 안전요건	· · · · ·	p.72
표 44. 반려동물 소품-면봉 안전요건	· · · · ·	p.73
표 45. 사람과 개의 전기저항력(피부)	· · · · ·	p.73
표 46. 생물체에 흐르는 전류세기에 따른 위험도	· · · · ·	p.74
표 47. 호신용 전자충격기 제품제조기준	· · · · ·	p.74
표 48. 호신용 전자충격기(사람 대상) 성능 기준	· · · · ·	p.75
표 49.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의복류	· · · · ·	p.80
표 50.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가구	· · · · ·	p.81
표 5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축산자재	· · · · ·	p.83
표 52.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문구류	· · · · ·	p.83
표 53.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가전제품, 아동용품	· · · · ·	p.84
표 5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주방용품	· · · · ·	p.85
표 55.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생활위생용품	· · · · ·	p.86

## 그림 목차

그림 1. 반려동물 시장에서 연평균 인당 이용금액 추이(상)와 연 30만원 이상 반려동물 관련 지출하는 고객 비중 변화	· · · · ·	p.11
그림 2. 해외직구 반려동물 용품 판매량 증가율	· · · · ·	p.12
그림 3. 반려동물용품 항목별 성장률	· · · · ·	p.13
그림 4. 도소매서비스업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 매출액	· · · · ·	p.14
그림 5. 제품불량 및 부작용 중 피해 유형	· · · · ·	p.52
그림 6. 미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	· · · · ·	p.59
그림 7. 일본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엔)	· · · · ·	p.59
그림 8. 중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위안)	· · · · ·	p.60
그림 9. 독일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백만 유로)	· · · · ·	p.60
그림 10. 영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백만 파운드)	· · · · ·	p.60

## I. 서론

### 1. 연구배경1 -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

가. 반려동물용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 증가

- 1) 1인 가구 및 핵가족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
- 2) 반려동물의 양육증가와 관련하여 국내 반려동물 시장 역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3) 특히,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펫콕족(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용품 매출이 크게 성장

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 증가

- 1) 장난감, 외출용품(목줄, 가슴줄 등), 가구(침대, 매트 등), 배변패드 등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분류체계와 안전검사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2) 공산품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부재를 틈탄 불량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피해 발생

다. 반려동물용품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 필요

### 2. 연구배경2 - 국내 실정이 반영된 반려동물용품 안전인증기준 및 제도 필요

가.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동물식품 외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미비

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제도 부재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반려동물 안전 우려

다.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해외의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를 국내 반려동물용품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3. 연구배경3 - 안전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가.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필요

나. 가슴줄, 목줄, 입마개 등 사고방지로 이용되는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기준 제시를

위한 근거 확보

다. 전기충격 빙음방지기 활용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및 제시

#### 4. 연구방향

가. 국내외 반려동물용품 시장 조사 및 비교분석

나. 국내외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현황 파악

다. 현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의한 사고사례 및 피해 보상제도 조사

라.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의 분류체계 제시

가) 주요 안전성 논란 반려동물용품 기준척도 및 기준품목 마련 및 제시

2)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검사 및 인증기준 제시

3)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4) 반려동물용품 산업활성화 방안 제시

## II. 연구 내용

### 1. 반려동물용품의 현황 및 실태조사

#### 가.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 파악

##### 1) 국가기관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963년 사료관리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용품의 일부를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외품, 사료로 분류하고 있음(표 1)

표 1.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동물용 의약품	신경계작용약	중추신경계작용약, 자율신경계작용약, 국소마취약, 복합신경계작용약, 기타신경계작용약
	순환기계작용약	강심약, 이뇨약, 혈관확장약, 항응고제, 복합순환기계작용약, 지혈제, 기타순환기계작용약
	호흡기계작용약	진해거담약, 기관지확장약, 호흡촉진약, 복합호흡기계작용약, 기타호흡기계작용약
	소화기계작용약	건위약, 소화약, 정장약, 지사약, 복합소화기계작용약, 기타소화기계작용약
	비뇨생식기계 작용약	생식기약, 비뇨기약, 복합비뇨생식기계작용약, 기타비뇨생식기계작용약
	감각기계작용약	눈약, 코약, 귀약(반려동물용 귀세척제 제외), 구강약, 기타감각기계작용약
	외피작용약	외피용진통소염약, 기생충공팡이약(반려동물용제외), 발굽치료약, 창상감염치료약, 제각용약, 복합외피용약, 기타외피용약
	대사성약	대사작용호르몬(생식기계작용호르몬 제외), 비타민, 아미노산, 광물질, 면역촉진약, 생약추출분해약, 발효생성약, 면역억제약, 전해질 및 영양공급약, 복합대사성약, 기타대사성약



	항병원성약	합성항균제, 항원충약, 구충제, 항바이러스약, 항진균약, 진드기구제역, 항생물질, 기타항병원성약	
	생물학적제제	백신류, 항혈청류, 진단용액, 혈액제제류, 난황황제, 희석액, 기타생물학적제제	
	<b>대분류</b>	<b>소분류</b>	
동물용 의약외품	소독제	소독제, 살균제	
	방충제 및 살충제	해충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유인살충제	
	반려동물용제제	구강위생제제, 귀세정제, 눈세정제, 탈취제, 행동유도제, 행동개선제, 헤어볼컨트롤 제제, 모발 외용제제	
	유두침지제	-	
	외용제제	차상부위 보호제, 관절보호제, 발굽보호제	
	영양보조제	단일 또는 복합제제(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제품은 제외)	
	면역기능 및 생리기능 촉진제	생약규격집에 등재된 생약제제(서방의학적)	
	보조적 사료첨가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곰팡이독소제거제, 항살모넬라제 등(사료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제품 제외)	
	동물용 정액희석제	-	
	위생용품	감싸개, 가리개, 거즈, 탈지면, 반창고, 소독용 티슈, 외가수술표, 세척용 욕용제(고체인 화장비누는 제외)	
	<b>종류</b>	<b>대분류</b>	<b>중분류</b>
사료	단 미 사 료	식물성	곡류, 강피류, 박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조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콩류, 견과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동물성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낙농가공부산물류
		광물성	식염류,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기타	유지류, 단세포단백질, 남은음식물, 반려동물음용수, 기타
	혼합성	혼합제
배 합 사 료	양축용 배합사료	고기소, 젓소, 돼지, 닭, 오리, 개, 꿩, 말, 메추리, 사슴, 양, 오소리, 칠면조, 타조, 토끼, 거위, 노새, 당나귀, 꿀벌, 지렁이, 배합사료원료, 특수배합사료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축종별로 구별
	대용유용 배합사료	축우용대용유, 양돈용대용유, 주문용대용유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 료	고기소, 젓소, 기타반추동물
	그밖의 동물 ·어류용 배합사료	실험용동물, 반려동물, 사육하는 동물, 수산동물
보 조 사 료	결착제	천연결착제, 합성결착제, 합제
	유화제	*별지참조
	보존제	산미제, 향응고제, 향산화제, 향곰팡이제, 합제
	아미노산제	*별지참조
	비타민제	*별지참조
	효소제	당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인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합제
	미생물제	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 합제
	향미제	착향료, 감미료, 조미료, 합제
	비단백태질 소화합물	*별지참조

	규산염제	*별지참조
	완충제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 중조, 완충제합제
	착색제	천연착색제, 합성착색제, 합제
	추출제	초목추출물, 종자추출물, 세포벽추출물, 동물추출물, 기타, 합제
	올리고당	*별지참조
	기타	*별지참조
	혼합제	혼합성 보조사료

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동물용의약품(수산용)에 대해 분류하고 있음(표 2)

표 2. 해양수산부에서 분류한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대분류	중분류
수산용 항생·항균물질	아목시실린 나트륨, 아목시실린 수화물, 아목시실린 삼수화물+플로르페니콜, 암피실린 나트륨, 암피실린수화물, 세프티오퍼 소디움, 세파렉신 수화물, 세파렉신+황산 겐타마이신, 염산 클린다마이신, 독시사이클린, 염산 독시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티오시안산염, 에리스로마이신 티오시안산염+설파디아진+트리메토프림, 에리스로마이신+설파디아진+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 플루메퀸, 황산 겐타마이신, 황산 네오마이신, 옥소린닉산, 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황산 네오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엔보네이트염, 설파디아진+트리메토프림, 설파디메톡신 나트륨, 설파모노메톡신, 치암페니콜, 세파드록실, 엔로플록사신, 날리디실산
수산용 구충제	비치오놀, 포르말린, 후마길린, 프라지관텔, 트리클로로폰, 과산화수소
수산용 백신	Edwardsiella tarda, Streptococcus iniae, Streptococcus

	parauberis, Streptococcus iniae + Streptococcus parauberis, Streptococcus iniae + Streptococcus parauberis + Edwardsiella tarda, Listonella anguillarum + Streptococcus iniae+Streptococcus parauberis+ Edwardsiella tarda, Listonella anguillarum+Tenacibaculum maritimum + Streptococcus iniae+Streptococcus parauberis+ Edwardsiella tarda, Lactococcus garvieae + Vibrio harveyi+Streptococcus iniae + Streptococcus parauberis+ Edwardsiella tarda, Listonella anguillarum + Vibrio harveyi + Streptococcus iniae + Streptococcus parauberis+Edwardsiella tarda, Vibrio harveyi+Streptococcus iniae+Streptococcus parauberis +Edwardsiella tarda, Miamiensis avidus, Miamiensis avidus+Tenacibaculum maritimum, 참돔이리도 바이러스, 바이러 스성출혈성패혈증 바이러스
수산용 소화기계작용약	-
수산용 대사성약	-
수산용 기타 의약품	-

## 2) 민간 기업

### 가) 분류형태

- 민간기업은 해외의 반려동물 소매업체의 분류기준이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표 3, 4, 5)

표 3.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반려동물관리사 1급 교육과정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기본생활용품	하우스, 방석, 밥그릇, 급식기, 울타리, 펜스, 배변판, 패드, 켄넬
산책관련도구	목줄, 가슴줄, 리드줄
놀이관련도구	장난감
교육관련도구	클리커, 휘슬, 어질리티, 짚음 조절기, 덤벨, 더미, 입마개, 터그, 간식 주머니

표 4. 강아지대통령(소매업체)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위생/배변	배변패드, 배변판, 기저귀/팬티, 배변봉투/집게
미용/목욕	브러쉬/거치대, 클리퍼, 미용가위, 발톱/발 관리, 타월/가운
급식기/급수기	식기/식탁, 자동급식기, 급수기/물병, 정수기/필터, 보관통/사료스푼, 식기매트, 젓병
하우스/울타리	하우스, 방석/매트, 계단, 철장/울타리, 안전문
이동장	이동가방, 유모차, 차량용
의류/액세서리	티셔츠, 후드티, 패딩/코트, 원피스, 올인원, 신발/양말, 스카프/타이, 머리핀/고무줄, 팬시
목줄/인식표/리드줄	목줄, 가슴줄, 인식표, 리드줄
장난감	봉제장난감, 치실장난감, 고무장난감, 공, 원반
훈련	짚음제어, 행동 제어, 클릭커 트레이닝
생활/가전	생활용품, 청소용품, 가전

표 5. 펫클럽(소매업체)에서 분류한 반려동물용품 체계

강아지용품	위생/배변용품, 브러쉬, 미용가위/발톱깎이, 장난감, 노즈워크 장난감, 젓병, 훈련용품, 의류,
외출용품	목줄, 가슴줄, 리드줄, 트윈줄, 핸들러줄, 자동줄, 아웃케이בל, 이동장, 배변봉투, 휴대용식기, 입마개
홈·리빙	방석, 반려동물전용수건, 계단, 하우스/울타리, 매트, 이동장, 식기

나. 국내 반려동물용품산업 시장 규모 및 현황 파악

1) 국내 반려동물 용품의 시장 현황

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7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2014년 15,684억원, 2016년 21,455억원으로 파악

- 2018년 26,510억원, 2019년 30,002억원, 2021년에는 37,694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당시 사료산업은 4,841억원, 용품관련 산업 3,849억원, 수의 서비스업 6,551억원, 장묘 및 보호서비스 338억으로 파악

#### 나)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에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0.9조원에서 2015년 1.8조원으로 전망
- 이 중 사료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53억 규모로서 절반 이상임
  - ※ 반려동물 연관 산업: ①생산·유통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완구),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등)

#### 다) 유로모니터

- 2019년에 발표한 '2020 펫케어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따르면 국내 펫케어 시장 규모를 16억3300만달러(1조9440억원)로 파악
- 이 중 반려동물 사료가 61%, 반려동물 용품이 39%를 차지

### 2) 소비 성향

#### 가)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 1년에 30만원이상 반려동물에게 지출하는 고객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반려동물 인구 18%가 30만원이상 관련된 소비를 하였지만 2019년에는 인구 22%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4대 업종에서 1회 이상 카드 결제를 한 고객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데이터를 추출(그림 1)(신한카드, 2020)

#### 나) 모바일커머스 티몬

- 2018년 상반기 기간 동안 반려동물용품에 사용한 돈은 1인당 월평균 10만 7,425원이이며 같은 사람이 패션/뷰티 용품에 한 달간 소비한 1인 평균 금액(10만183원)보다 7% 높고, 식품/생활용품 구매(7만8,353원)보다 37% 많음

### 3) 유통경로(판매처, 구입처 등)

#### 가) 신세계 몰리스펫샵

○국내 34개의 매장 운영 중이며 매년 2~5%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나 전체 반려동물용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5% 미만으로서 온라인 채널로 펫용품 소비가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나) 카페24

○ 2015년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오픈한 반려동물용품 전문몰이 1000여개에 달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다) 이베이코리아 G마켓(그림 2)

- 해외 직구 반려동물용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음(박성규, 2019)
- 급식기·급수기 판매량이 596%이며, 고양이 간식(272%), 강아지 간식(204%)도 2배 이상 증가
- 강아지 미용용품(68%), 고양이 스크래처(21%), 고양이 영양제(21%), 강아지 위생용품(20%), 강아지 영양제(18%), 고양이 위생용품(4%) 순으로 판매량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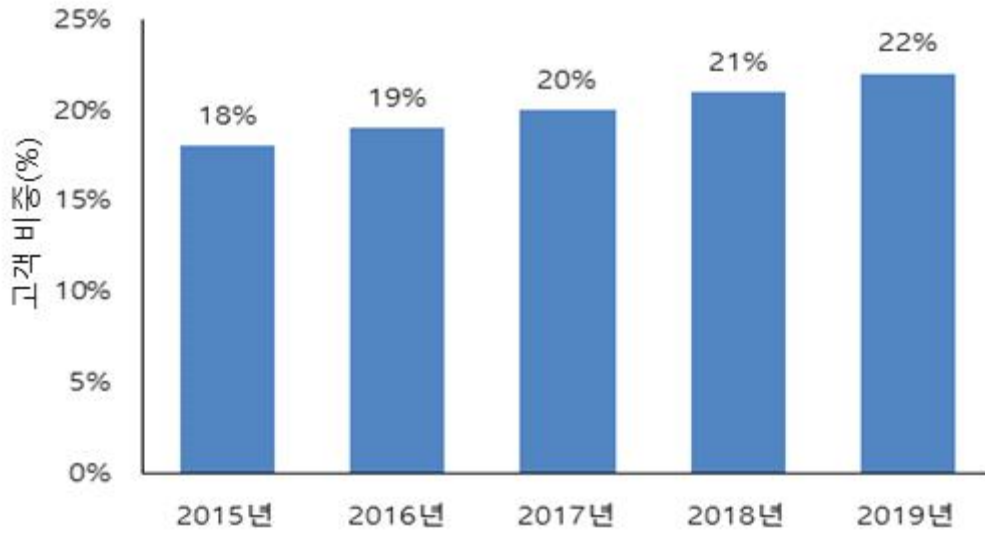


그림 1. 반려동물 시장에서 연평균 인당 이용금액 추이(상)와 연 30만원 이상 반려동물 관련 지출하는 고객 비중 변화(출처 : 신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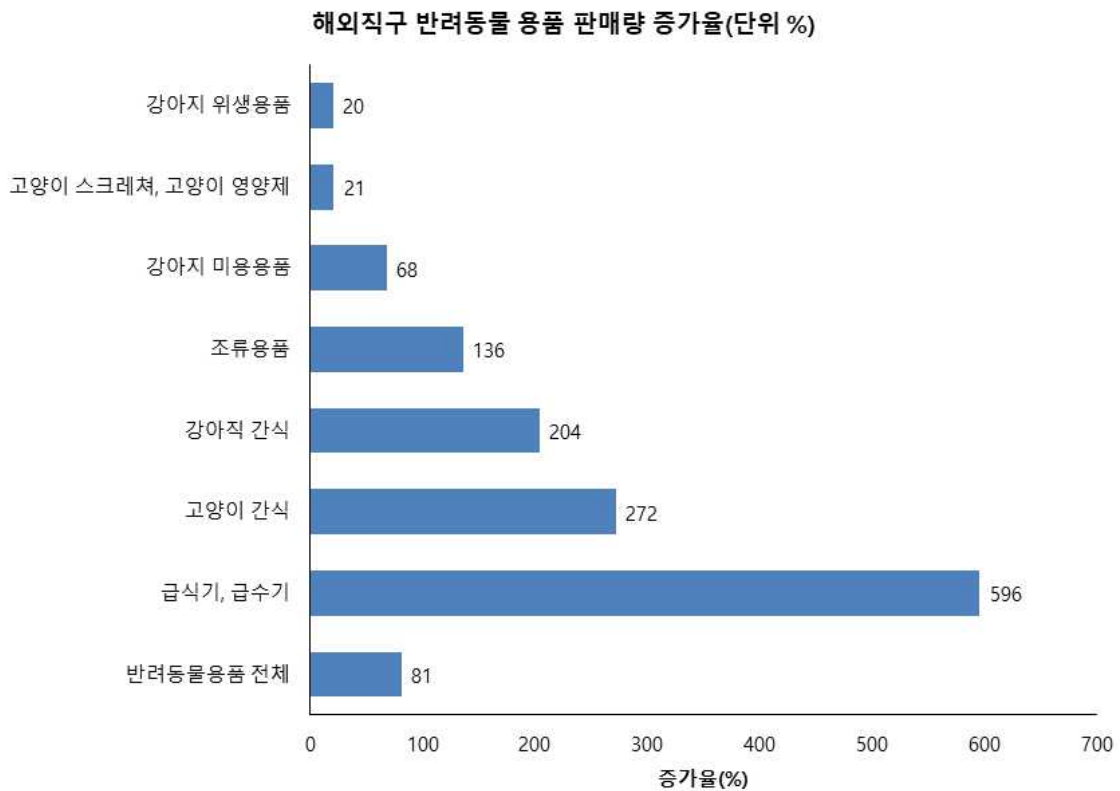


그림 2. 해외직구 반려동물 용품 판매량 증가율(원자료출처 : G마켓)



라) 유로모니터

- 2019년 글로벌 펫케어 시장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약 144조원을 차지하며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6% 증가한 154조원으로 예상
- 또한 국내 펫케어 시장규모 역시 2019년 약 1조 9440억원에서 2020년에는 2조 580억원으로 증가 전망
- 한국은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거래 비중이 2019년 52.8%으로써, 유통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최승근, 2020)

4) 품목별(장난감, 케이지 등)

가) 특허청

- 최근 5년간('14~'18) 반려동물 용품에 관한 특허출원은 총1,419건으로 2014년 140건에서 2018년 4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세부 기술 분야별로는 위생·미용분야가 495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악세서리 271건, 이동장을 포함한 집·가구가 253건, 운동·놀이장치가 205건, 급수·급식기 178건임

나) 이베이코리아 G마켓

- 반려동물용품 판매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성장하며 15%가량 커짐
-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가량 성장하였으며, 가장 잘 팔린 품목은 고양이 하우스·방석으로 전년 대비 73%가량 늘었음
- 고양이사료(습식)는 64% 늘었고, 강아지영양제(42%), 고양이미용·패션(24%), 고양이 장난감(16%), 강아지사료(습식)(15%), 관상어용품(14%), 조류용품(13%), 고양이사료(건식)(12%), 고양이 영양제(12%), 강아지간식(6%), 강아지사료(건식) (3%)순으로 나타남(그림 3)(차민영,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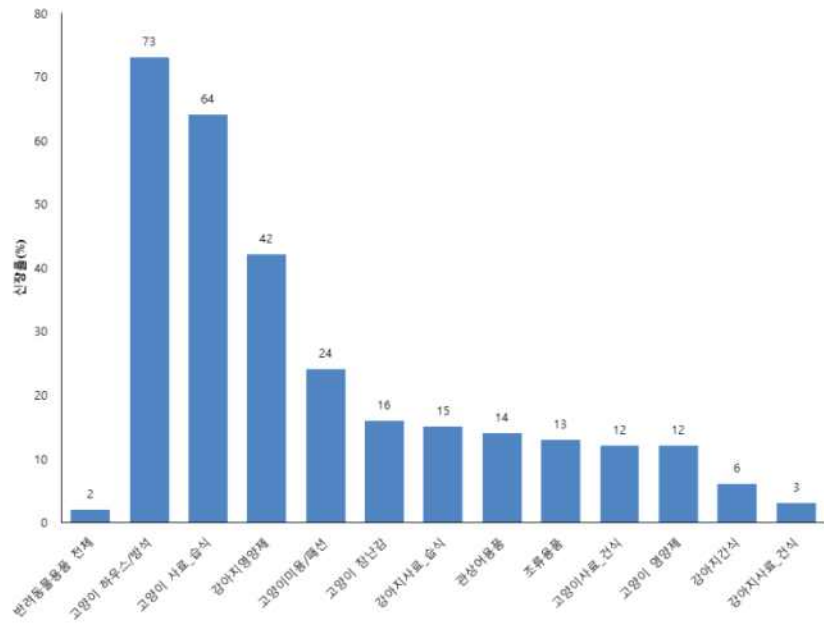


그림 3. 반려동물용품 항목별 성장률

## 5) 반려동물용품 도소매업

### 가) 통계청

- 도소매서비스업 분야에서 2018년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매업의 매출액은 9,393억원으로 나타남(그림 4)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약 1,7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약 130% 성장하였고, 4년만인 2018년에는 2014년 대비 144%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9,400억원의 매출액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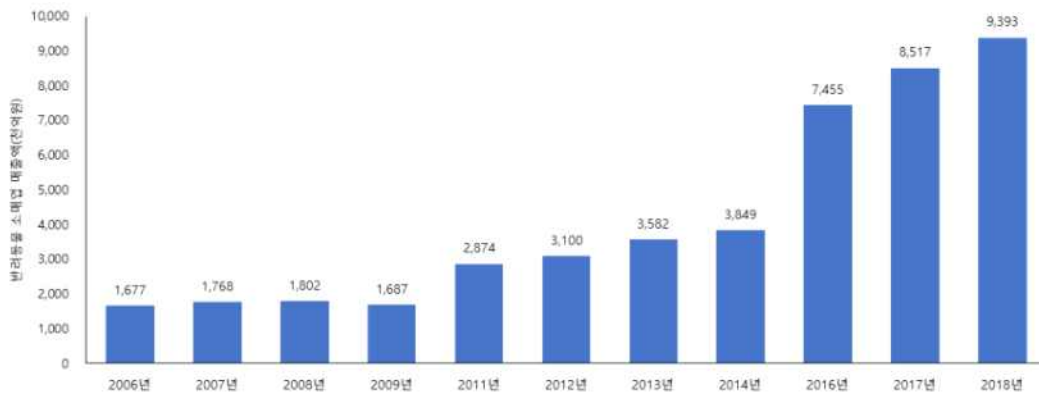


그림 4. 도소매서비스업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 매출액

다.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실태조사

1) 목줄, 가슴줄, 입마개

가) 인명사고

- 반려견의 야외 활동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목줄과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마개의 품질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표 6)
- 소방청에 따르면 2014, 2015년도 1천명 대였던 사고 수가 2016년~2018년에는 2천여 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를 당함(표 7)
- 연령별로는 50대 1,550명, 40대 1,241명, 60대 962명, 70대 718명순으로 젊은층보다 더 많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8)
- 다만 개물림 사고는 입마개나 목줄의 품질 불량에 의한 사고인지 보호자의 도구 사용 미숙에 의한 사고인지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된 자료가 없음

표 6. 반려동물 안전용품(목줄, 가슴줄 등) 파손 관련 기사

기사제목	날짜	출처
“무서운 개가 돌아다녀요”신고 받고 확인한 개의 반전	2016.7.31.	YTN
여수서 목줄 풀린 개에 고교생 물려...경찰 조사	2017.10.25.	연합뉴스
목줄 끊어져 탈출한 개가 주민 3명 물어...주인 안락사 의사 밝혀	2018.11.27.	서울경제
개통령의 위엄"..강형욱, 맹견 훈련 중 입마개 풀리는 사고	2020.4.28.	헤럴드 POP
하루 6명 개물림 사고...'목줄 안전검사'없었다	2020.10.22.	파이낸셜뉴스

표 7. 2014~2018년 5년간 개물림 사고 빈도수(소방청)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1,889명	1,842명	2,111명	2,404명	2,368명

표 8. 2016년~2018년 연령별 개 물림사고 수(소방청)

연령	10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이상
인원	436	312	550	700	1,241	1,550	962	718	365	49

나) 종류 및 관리체계 현황

- 목줄이나 가슴줄, 입마개는 반려견과 사람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ex) 개물림, 교통사고 등)

표 9. 입마개 종류



<p>폐쇄형</p>	<p>주둥이의 끝 부분이 막혀있음 상대적으로 높은 개물림방지 정도를 가짐</p>	
<p>끈형</p>	<p>끈형태를 가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둥이 움직임이 보장됨</p>	

표 10. 입마개 소재에 의한 분류

<p>섬유</p>		<p>실리콘</p>	
<p>가죽</p>		<p>금속</p>	
<p>플라스틱</p>			

표 11. 가슴줄 종류



앞고리형	위급 시 줄을 당겨 반려견을 돌려세울 수 있음	
위고리형	반려견의 활동이 자유로우며 보호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태임	

표 12. 소재에 의한 가슴줄 분류

섬유		가죽	
----	---	----	---

표 13. 목줄 종류



벨트형	목걸이 둘레가 고정되어 있음	
체인형	당기면 조여지는 형태로 반려견 제어에 용이함	

표 14. 소재에 의한 목줄 분류

섬유		가죽	
금속			

- 동물보호법에서는 일정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입마개(맹견일 경우) 등 안전용품 사용할 것을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들은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의 맹견들은 반드시 목줄(가슴줄이 아님)과 입마개 등 안전용품을 착용해야함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중략)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 온라인쇼핑몰에서 임의적으로 목줄, 가슴줄을 판매 중인 62개 종류에 대해 조사결과, 단 11종류의 제품만이 내구성(강도테스트) 및 유해성(유해성분부, 피부자극 등) 검사를 진행하고 진행결과를 상세페이지에 명시함(표 9)
  - 단, 검사를 실시한 용품들의 경우 검사항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표 15.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안전성 검사 실시여부를 명시한 목줄, 가슴줄 용품 종류

품명	인증기관	시험분야
p브랜드 comfort-x harness	FITI시험연구원	화학적(알러지 성분, pH, 유해화학성분 등) 물리적(압력, 무게 등)
A브랜드 마이핏 가슴줄, 리쉬	KOTITI시험기관	물리적(압력, 무게 등)
H브랜드 강아지목줄 HHBB10052	자체인증	물리적(압력, 무게 등)
m브랜드 노터치 가슴줄 밴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물리적(압력, 무게 등)
d브랜드 앞섬방지 가슴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화학적(유해화학성분 등) 물리적(압력, 무게 등)
c브랜드 소프트 H형 가슴줄	FITI시험연구원	물리적(압력, 무게 등)
g브랜드 H&Front 가슴줄	PS반려동물제품인증	화학적(알러지성분, 유해화학성분, 환경호르몬 등), 물리적(땀, 변색, 이염, 압력, 무게 등)
y브랜드 H형 강아지 가슴줄	FITI	물리적(압력, 무게 등)
b브랜드 올데이 가슴줄	OEKO-Tex	화학적(유해성분, 중금속 등), 물리적(물, 마찰강도 등)
j브랜드 power harness	OEKO-Tex	화학적(유해성분, 중금속 등), 물리적(물, 마찰강도 등)
b브랜드 기능성 가슴줄	OEKO-Tex	화학적(유해성분, 중금속 등), 물리적(물, 마찰강도 등)

## 2) 전기충격 빙임방지기

### 가) 소음발생

-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에 의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00건이 넘게 발생(표 16)

표 16. 2015년~2018년 서울시 반려견 소음 민원 발생 건(KBS뉴스. 2019)

발생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생 건수	1,337건	1,503건	1,731건	1,617건

- 반려견에 의한 소음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충격 빙임방지기를 사용함
- 동물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와 소음방지효능에 따른 긍정적 견해 꾸준히 제기되어옴

### 나) 제품 형태

- 목에 거는 목걸이 형태(표 17)
- 센서형의 경우 빙임 발생 시 센서가 자동으로 빙임을 감지하고 일정 크기의 전기 충격을 발생 시킴
- 원격형의 경우 빙임 발생 시 보호자가 원격장치를 통해 일정 크기의 전기 충격을 발생 시킴

### 다) 실태 파악

- 언론 보도를 통해 전기충격 빙임방지기 전압크기는 최대 4,400~4,600V(투데이신문, 2019)로 알려져 있음
- 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의 평균전압(3,000~6,000V)과 비슷한 수준임(표 18)
- 최근 5년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된 KC 인증제품은 11개이며, 중국 제조는 3종, 국내 생산 제품은 8종임(표 20)
- 하지만 이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시험분석이며 제품의 실효 전압 및 전류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님



- 25개 제품 중 실효 전압 및 전류<sup>1)</sup>를 표시한 제품은 단 한 제품도 없음
- 반려견에게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 미국에서 사용되는 반려견용 전기충격 짚음방지기의 전류는 0.007A에서 1.25A으로 매우 다양하며, 작동시간은 최소 1초에서 30초까지임 (topdogtips, 2018)

표 17. 전기충격 짚음방지기 형태

센서형	센서에 의해 짚음 감지 후 자동으로 전기자극 발생 시킴	
원격형	짚음 발생시 원격으로 전기자극 발생 시킴	

표 18. 경찰용 전자충격기와 반려견용 전기충격 짚음방지기에서 사용되는 평균 전압 비교

	경찰용 전자충격기	반려견용 전기충격 짚음방지기
평균전압	3,000~6,000V	4,400~4,600V

1) 전압 :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 :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

라) 관리 기준

- 사람에게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견에게 사용되는 전기충격기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역시 반려견에게 사용되는 전기충격기를 다루지는 않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중략)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11.“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중략)

③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 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삭제 <2018. 12. 31.>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19) 삭제 <2018. 12. 31.>
	20) 삭제 <2018. 12. 31.>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삭제 <2018. 12. 31.>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1)부터 25)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대상 없음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1) 및 2)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비고)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 2) 전기 용해기
- 3) 이·미용기기
-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5) 컴프레서(compressor)
- 6) 전기온수매트
- 7) 구강청결기
- 8) 해충퇴치기
- 9) 전기집진기
- 10) 서비스기기
- 11) 전기에어커튼
-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14) 게임기구
-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16) 전기훈증기
- 17) 수도 동결 방지기
- 18) 산소이온발생기
- 19) 전기정수기
- 20) 전기세척기
- 21) 전기헬스기구
-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23) 삭제 <2019. 10. 21.>
- 24) 가정용 전동재봉기
- 25) 사우나기기
-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27) 기포발생기기
-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29) 전기분무기
-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p>3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p> <p>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p> <p>34) 자동판매기</p> <p>35) 전기소독기</p> <p>36) 제습기</p> <p>37) 음식물처리기</p> <p>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p>40) 전기가열기기</p> <p>41) 전기욕조</p> <p>42)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비고) 정격압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전기차 충전기는 제외한다)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p>
아. 전동공구	<p>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p> <p>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p>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p>1) 텔레비전수상기</p> <p>2) 디스크 플레이어</p> <p>3) 오디오시스템</p> <p>4) 삭제 &lt;2018. 12. 31.&gt;</p> <p>5) 오디오프로세서</p> <p>6) 영상프로세서</p> <p>7) 그 밖에 1)부터 6)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p> <p>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p>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p>1) 모니터</p> <p>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p> <p>3) 프로젝터</p> <p>4) 문서 세단기</p> <p>5) 천공기</p>

	6) 삭제 <2018. 12. 31.>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범위에 전기충격 빔방지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④ 소유자들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그 외 짚음방지기

- 대표적으로 분사식, 음파식, 진동식, 입마개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대성 논란이 있는 전기충격 짚음방지기와는 다르게 개의 신체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함(표 19)

표 19. 다양한 짚음방지기 형태


<p>분사식</p>	<p>목걸이형</p>	<p>목걸이 형으로 짚음 발생시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반려견의 얼굴부위에 특정 향을 분사함</p>	
<p>음파식</p>	<p>목걸이형</p>	<p>목걸이 형으로 짚음 발생시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초음파를 발생시킴</p>	
<p>음파식</p>	<p>부착형</p>	<p>반려견의 생활공간 안에 부착하는 형태로 짚음이 발생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생활공간에 초음파를 발생 시키며, 여러 마리에게 동시에 영향을 줌</p>	
<p>진동식</p>	<p>센서형</p>	<p>목걸이 형으로 짚음 발생시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진동이 발생함</p>	
<p>진동식</p>	<p>원격형</p>	<p>목걸이 형으로 짚음 발생시 보호자가 리모컨으로 진동을 발생시킴 여러마리 제어 가능함</p>	
<p>입마개형</p>		<p>입마개형으로 반려견의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여 짚음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차단함</p>	

- 분사식 짚음방지기는 짚음 발생 시 반려견이 불쾌하게 여기는 향이 나는 물질을 얼굴 또는 주변으로 분사하는 방식임
- 음파식 짚음방지기는 짚음 발생 시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반려견에게 자극을 주는 방식임
- 음파식 짚음방지기 중 최근 5년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된 KC 인증제품은 9개이며, 중국 제조는 8종, 스페인 제조 1종임(표 20)
- 진동식 짚음방지기는 짚음 발생 시 목걸이가 진동하여 자극을 가하는 방식임
- 진동식 짚음방지기 중 최근 5년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된 KC 인증제품은 11종이며, 중국 제조는 7종, 국내 제조 4종임(표 20)

표 20. KC등록 개짚음방지기 제품 목록

상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 국가	날짜	상태	인증번호	형태	제품사진
(주)독트라	Dog Training Device	YS200	한국	2016- 07-04	적합 등록	MSIP-RE M-DOG- YS200	전기	
(주)독트라	DOG TRAINING DEVICE	YS600	한국	2016- 07-29	적합 등록	MSIP-RE M-DOG- YS600	진동/전 기	
(주)라이트 컴	애견 짚음 방지기	ITB696	중국	2016- 08-19	적합 등록	MSIP-REI -LCC-ITB 696	전기	
(주)독트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 선조정용 무선...	282C	한국	2017- 01-10	적합 인증	MSIP-CR M-DOG-2 82C	전기	
프롬비(주)	펫 초음파 짚음방지 훈련기_FA 301	FA301	중국	2017- 12-28	적합 등록	R-REI-FR B-FA301	음파	-
프롬비(주)	펫 초음파 짚음방지 훈련기_FA 300	FA300	중국	2018- 01-11	적합 등록	R-REI-FR B-FA300	음파	-
우아펫(WO O A PET)	강아지짚음 방지기	독프리즈 짚음방지기	중국	2018- 04-05	적합 등록	R-REI-D9 H-DOGPL EASE-01J S	진동	

주식회사 스프링클	레이더캔 애견 행동교정 훈련기	R-131	스페인	2018-06-11	적합 등록	R-REI-PL W-R-131	음파	
(주)독트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 선조정용 무선기기	2702T&B	한국	2018-08-21	적합 인증	R-C-DOG -2702TB	전기	
골드벙커	듀얼 초음파 짚음방지기	CSB-12	중국	2019-06-27	적합 등록	R-R-GB0 -CSB-12	음파	
(주)다음네트웍스	강아지 짚음방지기	M-237	중국	2019-07-11	적합 등록	R-R-DNw -M-237	알수 없음	-
(주)다음네트웍스	짚음방지	TZ-PET687V	중국	2019-07-11	적합 등록	R-R-DNw -TZ-PET 687V	알수 없음	-
(주)펫트코리아	레디펫 짚음방지기 대	831772000208	중국	2019-08-09	적합 등록	R-R-PK9 -8317720 00208	음파/진 동	-
(주)펫트코리아	레디펫 짚음방지기 소	831772000218	중국	2019-08-09	적합 등록	R-R-PK9 -8317720 00218	음파/진 동	-
(주)펫트코리아	레디펫 짚음방지기 대 NBC	831772000123	중국	2019-09-23	적합 등록	R-R-PK9 -8317720 00123	음파/진 동	
(주)펫트코리아	레디펫 짚음방지기 소 NBC	831772000116	중국	2019-09-23	적합 등록	R-R-PK9 -8317720 00116	음파/진 동	-
(주)독트라	DOG TRAINING DEVICE	T&B DUAL	한국	2019-11-18	적합 등록	R-R-DOG -TBDUAL -Rx	전기	
(주)독트라	DOG TRAINING DEVICE	iQ MINI	한국	2019-11-18	적합 등록	R-R-DOG -IQMINI- Rx	진동/전 기	
(주)독트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 선조정용 무선...	T&B DUAL	한국	2019-11-19	적합 인증	R-C-DOG -TBDUAL -Tx	전기	

(주)독트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 선조정용 무선...	iQ MINI	한국	2019- 11-19	적합 인증	R-C-DOG -IQMINI- Tx	진동/전 기	
골드벙커	애견 짚음방지기	PET853	중국	2019- 11-28	적합 등록	R-R-GB0 -PET853	음파+전 기	
(주)독트라	DOG TRAINING DEVICE	iQ VIBE	한국	2020- 01-30	적합 등록	R-R-DOG -iQVIBE	진동	
(주)다와	애견 진동 목걸이	dw-376	중국	2020- 02-17	적합 등록	R-R-dwg -dw-376	진동	
주식회사 미홈	자극형 짚음방지기	BS-LED	중국	2020- 07-08	적합 등록	R-R-meH -BS-LED	전기	-
주식회사 미홈	진동형 짚음방지기	JC-LED	중국	2020- 07-08	적합 등록	R-R-meH -JC-LED	진동	-

라. 동물용품 관련 연관산업 중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항목 분류 현황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류 현황

가) 분류명 및 코드

- 반려동물용품산업과 관련하여 사료와 의약품은 제조와 도매, 소매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물용 의약외품과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에 대한 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표 21, 22, 23)

표 21.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사료(제조, 도매)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가금류를 포함한 가축용, 어류 양식용, 애완동물용, 실험동물용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어용 배합사료 제조,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물고기용 배합사료 제조, 배합사료 제조, 실험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제조, 양계용 배합사료 제조, 양돈용 배합사료 제조, 어류양식용 배합사료 제조, 옥수수 배합사료 제조, 젖소용 배합사료 제조,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축우용 배합사료 제조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p>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배합사료용 혼합 조제품 및 조제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껌 및 비스킷 등의 애완동물용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물사료용의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도 포함한다./</p> <p>가축사료 첨가제 제조, 개껌 제조(애완동물용 기호품), 건초사료 제조, 단미사료 제조, 동물 기호식품 제조(비스킷, 개껌 등), 동물용 비스킷 제조, 목초 사료용 가공제품 제조, 배합사료용 혼합조제품 제조, 볏짚 가공사료 제조, 보조사료 제조, 사료 첨가제 제조, 사료용 조제 보조사료 제조, 애완동물 간식용 기호품 제조, 음식 폐기물 가공 단미사료 제조, 조제 단미사료 제조</p>
46203	사료 도매업	<p>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식용작물 도매 제외</p> <p>/가축사료 도매, 건초(사료용) 도매, 단미사료 도매, 동물사료 도매, 미생물사료 도매, 배합사료 도매, 보조사료 도매, 수산 동물사료제조, 애견사료 도매, 양식장사료 도매, 양어용사료 도매, 어류용사료 도매, 육지동물사료 도매, 축산사료 도매</p>

표 22.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일반 공산품 용품, 사료소매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p>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가축용 사료 소매 제외</p> <p>/관상어(열대어 등) 소매, 관상용 물고기 소매, 관상용 새 소매, 관상용 조류 소매, 금붕어 소매, 애견 소매, 애견 소품 소매, 애견사료 소매, 애견센터(애완동물 소매), 애견용품 소매, 애완동물 소매, 애완동물 사료 소매, 애완동물용품 소매, 애완용 곤충 소매, 애완용 동물 소매, 애완용 동물사료 소매, 애완용 새모이소매, 애완용 조류 소매, 열대어 소매, 열대어 수족관(소매점) 소매, 햄스터 소매</p>

표 23. 반려동물 관련 산업 - 의약품(제조, 도매, 소매)

코드	분류명	설명/색인어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p>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p> <p>가축약품 제조, 가축용 비타민결핍증 치료제 제조, 동물용 백신 제조, 동물용 의약품 제조, 번식장애 개선 및 수태율 향상제 제조, 비타민제 동물용 의약품 제조, 알칼로이드 성분 동물용 의약품 제조, 약제품 제조(동물용), 약품 제조(동물용), 호르몬제 동물용 의약품 제조</p>
46441	의약품 도매업	<p>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lt;제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46332)</li> <li>·원료 상태의 의약제제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46739)</li> </ul> <p>/가정용 의약제제 도매, 가정용 의약품 도매, 가축 약품 도매, 검사 약품 도매, 구급 약품 도매, 구충제 도매, 내복약 도매, 동물 약품 수입, 동물용 약품 도매, 비염약 도매, 비타민제 도매, 사람 및 동물용 약품 도매, 생약재 의약품 도매, 소화제 도매, 안약 도매, 양약 도매, 연고제 도매, 의료용 약 도매, 의약품 강장제 도매, 의약품 독약 도매, 의약품 드링크제 도매, 의약품 영양제 도매, 의약품 도매, 인체용 약품 도매, 주사액 도매, 진통제 도매, 한방약 도매(한약재 제외)</p>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p>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가정 및 위생용 방충제 소매, 가정 및 위생용 살균제 소매, 가정 및 위생용 살충제 소매, 가정 및 위생용 소독제 소매, 가정약 소매, 가정용 방충제 소매, 가정용 의약품 소매(약국), 가축약품 소매, 구급약품 소매,</p>

	구충제(가정 및 위생용) 소매, 내복약 소매, 동물 의약품 소매, 동물용 의약품 소매, 두통약 소매, 드링크제(의약품) 소매, 보약(양약, 한약 포함) 소매, 비타민제 소매, 생약(의약품) 소매, 소화제 소매, 약국, 약방(의약품 소매), 의약품 소매, 양약 소매, 의료용품 소매, 의약품 밴드 소매, 의약품 소매, 조제 한약 소매, 진통제 소매, 축산 의약품 소매, 캡슐제 의약품 소매, 파스(소염 진통제) 소매, 한방약 소매, 한약방, 해열제 소매
--	--

## 2.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조사 마련

가. 국내 반려동물용품 다양화 및 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관리 실태 파악

1) 반려동물용품 품목별 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 유무 파악

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제조, 작업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음

<p>[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p> <p>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li> <li>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li> <li>3. 조제에 필요한 기구</li> </ol> <p>제4조(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li> <li>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li> <li>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li> <li>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li> </ol>
---



②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용 의약품 상호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소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무균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 제제의 작업소 및 그 밖의 제제 작업소는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
2. 주사제 작업소, 점안제 작업소, 과립제 작업소, 산제 작업소, 내·외용 액제 작업소, 주입제 작업소, 연고제 작업소, 그 밖에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제형의 작업소는 각각 구획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식 기계설비의 설치 등으로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작업소는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작업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동물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방법이 원료합성 등과 같이 특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시설의 일부를 작업소 외에 둘 수 있다.

1.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
3. 위생적인 화장실·탈의실 및 수세시설
4.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제형·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작업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료 무게측정작업실, 제품 포장작업실 또는 용기 세척작업실은 각 작업소별로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방법이 원료합성 등과 같이 특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작업대, 다만, 오염의 우려가 없는 제제 또는 일관작업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상호 간에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고압세척기 등의 청소기구

다.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가루가 날리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습도 조절시설(흡습성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건조설비의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건조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유독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제조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소에만 해당한다)
6. 소독시설(무균제제, 내용액제 및 연고제의 작업소에만 해당한다)
- ④ 용량 500킬로그램 이상의 대형혼합기를 사용하는 산제작업소는 다른 제제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그 시설 중 항생제(항균제제를 포함한다)작업시설은 구분되어야 한다.

○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하는 장소, 도매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0조(동물용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관소는 위생적이어야 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원료·자재 및 제품별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이 원료·자재 및 제품별로 섞일 우려가 없도록 설비된 경우에는 이를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기준은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같은 종류의 제제인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조소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①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중 위탁한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에 관련되는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의 수탁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자동에어로졸 충전, 연필 제조, 가스 주입, 도금, 주물,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일), 판금, 사출, 인쇄, 코팅(coating), 도장, 멸균, 직조, 타면, 텐타(tenter) 또는 설계에 관한 공정을 수행하는 자(동물용 의약품외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동물용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부분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물용 의약품외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험의 수탁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나. 제11조 단서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할 것

2.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의 위탁자는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기준으로 제품마다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그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동물용 의약품등을 제조할 때에 사용한 첨가제 및 용기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동물용 의약품등 시험의 위탁자는 위탁시험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시험용 검체(檢體)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각 검체에 대한 시험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며, 수탁시험에 필요한 시약 및 표준품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는 제조 공정에 따른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판매 전 안전성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되어있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 ①법 제31조 제2항·제4항·제9항 및 법 제42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품목, 자료작성요령, 자료의 요건·면제범위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1. 기원 또는 발견·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에서의 사용현황등에 관한 자료
8.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와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9. 잔류에 관한 자료
10.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은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제5항,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6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제조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조신고 또는 제조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품목, 자료작성요령, 자료의 요건·면제범위와 심사기준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한다.

1. 기술문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다.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 라. 방사선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전자파장해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성능에 관한 자료
  - 사.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제 측정치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기원, 발견 또는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나. 안정성에 관한 자료
  - 다.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자료를 포함한다)
  - 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마. 국내 유사제품과 비교·검토한 자료 및 당해 제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 상기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물티슈, 탈취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은 유통 전 반드시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함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 제시된 지정요건을 갖추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함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의2(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시험분야별로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②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4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물식품(사료 및 간식)

- 제조와 품질관리, 사료검사, 검사기관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사료관리법]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① 제조업자 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며, 원료·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 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관리 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직무·인원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중략)

####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 그 외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 규칙, 시행령, 법령 등에서 고시하고 있는 품목 외의 일반 공산품이나 가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민간차원의 반려동물용품 시험 및 인증실태

가)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

- 한국애견협회와 KOTITI시험연구원이 협약하여 진행하는 민간인증제(표 24)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공산품 동물용품과 건축자재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검사 실시
- 8종류의 일반생활용품과 1종류의 건축자재로 분류(표 25)
  - 안전성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중 목줄과 가슴줄, 입마개 등은 안전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전기충격 빗음방지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음
  - 유해물질 유무, 내구성역학, 내구성이화학에 대해 검사 실시(표 26)
  - 항목에 따라 적절한 관리기준을 적용(표 27)
- 인증제 절차
  - 접수(한국애견협회) → 시험분석(KOTITI) → 시험결과통보(KOTITI) → 인증마크 부여 및 인증서 발급(한국애견협회)

나)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 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FITI 시험연구원이 협약하여 진행하는 민간인증제(표 24)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식품을 제외한 동물용의약외품, 공산품, 건축자재에 대해 인증실시
- 4종류의 동물용의약외품, 7종류의 일반용품, 1종류의 건축자재로 분류(표 28)
- 유해물질 유무, 견뢰도 등에 대해 검사실시
-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은 마련되어있으나 실시한 사례는 없었음
- 목줄과 가슴줄, 입마개 등은 외출용품으로 취급
- 인증제 절차
  - 접수(한국펫산업소매협회) → 시험분석(FITI) → 시험결과통보(FITI) → 인증마크 부여 및 인증서 발급(한국펫산업소매협회)



다) 운영체제

-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와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간 일반 공산품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규격을 비교한 결과,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기존의 법령이나 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였음(표 29)

표 24. 반려동물용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구분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인증기관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시험기관	(사)KOTITI 시험연구원	(사)FITI 시험연구원
시행년월	2019년 8월	2020년 7월
인증마크		

표 25.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의 반려동물용 공산품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일반생활 용품	의류	반려동물 의류 및 일반 섬유제품	B-01
	침구	매트, 방석, 담요, 타월, 텐트, 하우스(섬유제품, 합성수지제)	B-02
	이동용품	이동식 가방(슬링백, 백팩, 포대기), 이동용 케이지, 캐리어	B-03
	안전용품	리드줄, 가슴줄, 목줄, 입마개, 울타리(안전문), 구멍조끼	B-04
	놀이용품	인형, 장난감, 스크래처	B-05
	식기	식기, 물병 및 기타 용기(합성수지제, 금속류)	B-06
	위생용품	배변패드, 귀저기, 고양이용 모래, 화장실	B-07
	소품	기타 소품류(브러쉬, 칫솔, 가위, 발톱깎이, 선글라스, 인식표 등)	B-08
건축자재	도료 (페인트)	페인트	D-01

표 26.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의 반려동물 안전용품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비고
유해 물질	아릴아민	KS K 0734	지속 접촉 부위만 적용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ISO 18254-1(NPEO)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TS 16186	
	니켈(Ni)의 용출량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내구성 역학	인장강도	KS K 0520 준용 KS K ISO 105-E04	
내구성 이화학	땀견뢰도	KS K ISO 105-E04	지속 접촉 부위만 적용 (가슴줄)

표 27. 품목별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 현황

구분	품목	시험항목 및 기준적용
일반생 활용품	배변패드, 기저귀, 고양이용 모래	배변패드, 기저귀 : 위생용품관리법 기준 및 항목 준용 고양이 모래 :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시험기준 준용
	그 외 반려동물용품	별도의 법적근거나 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용하는 생활용품 대상 시험항목과 기준을 준용함 단, 섬유류 및 가방류 등의 텍스타일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관련 항목을 인용함
	건축 자재	어린이제공 공통안전기준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준용함

표 28.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의 검사대상 용품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일반용품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식기, 위생용품(고양이용 모래, 배변패드, 기저귀), 소품(브러쉬, 면봉)
건축자재	도료 (페인트)
동물의약외품	목용용품(샴푸, 린스, 비누, 탄산입욕제), 청결제(구강청결제, 눈세정제), 세정제품(탈취제, 물티슈)

표 29.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와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간 시험항목, 기준규격, 검사대상 비교(의약외품 제외)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		시험항목	KPPC반려동물용품인증제	
검사대상	기준규격		기준규격	검사대상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놀이용품	KS K ISO 3071	pH	KS K ISO 3071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놀이용품 도료(페인트)	KS K ISO 14184-1 EL241 환경표지인증 (페인트)	포름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준용 (페인트)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도료(페인트)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안전용품, 놀이용품	KS K 0734 KS K 0147(놀이용품)	아릴아민	KS K 0734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안전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ISO 18254-1(NPEO)	노닐페놀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안전용품	KS K 0736	알리지성 염료	KS K 0736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놀이 용품,소품 (합성수지제), 위생용품 (기저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위생용품, 면봉)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소품(브러쉬), 위생용품(기저귀) , 소품(면봉)
의류, 침구류, 안전용품	ISO/TS 16186	다이메틸푸마 레이트	ISO/TS 16186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안전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니켈의 용출량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KS K 0520 준용	붕합강도	KS K 0520 준용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완구 부속서5.24.6	작은부품 부착강도	완구 부속서 준용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EN 14682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KS K ISO 105-B02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놀이용품	KS K ISO 105-C10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10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놀이용품	KS K ISO 105-E01	물견뢰도	KS K ISO 105-E01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이동용품, 놀이용품	KS K 0650-1	마찰견뢰도	KS K 0650-1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의류, 침구류	KS K ISO 5077/ 6330	치수변화율	KS K ISO 5077/ 6330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이동용품	KS K 0520 준용	손잡이강도	KS K 0520 준용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이동용품	KS G 3102	지퍼강도	KS G 3102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안전용품, 놀이용품	KS K 0520 준용 KS K ISO 105-E04 (안전용품 추가항목)	인장강도	KS K 0520 준용 (리드줄/가슴줄)	의류, 침구, 가방, 외출용품, 놀이용품
이동용품, 놀이용품, 소품 (합성수지제), 도료(페인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총 납 함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용(식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소품)	식기, 소품(브러쉬)

이동용품, 놀이용품, 소품 (합성수지제), 도료(페인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총 카드뮴 함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소품(브러쉬)
안전용품	KS K ISO 105-E04	땀견뢰도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식기
-	-	총용출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식기
-	-	1-헥센, 1-옥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식기
위생용품 (고양이모래)	검출안됨	기생충란(알)	어린이용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용	위생용품 (고양이모래)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KS K 0733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산 (PCP)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KS K 0733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 (TeCP)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41	형광증백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포름알데히드	위생용품의 기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부속서		및 규격 준용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KS K 0731	총 납 및 총 카드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 소품(면봉)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안티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비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바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카드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크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수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기저귀), 도료(페인트)	KS G ISO 8124-3	셀레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기저귀)
위생용품 (배변패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삼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위생용품 (배변패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흡수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위생용품 (배변패드)
-	-	유해원소용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소품(브러쉬), 소품(면봉)
소품(면봉)	축의 끝과 면체 끝의 거리가 1 이상	면체와 축의 거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소품(면봉)
소품(면봉)	면체가 덮여지지 않은 부분이 40 이상	축간 거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소품(면봉)
소품(면봉)	적합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나무재질 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소품(면봉)
소품(면봉)	적합	축의 강도/ 나무재질 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소품(면봉)
소품(면봉)	16 이하 (면체에 한함)	포름알데히드	-	-

소품(면봉)	300 이하 (면체에 한함)	일반세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소품(면봉)
소품(면봉)	300 이하 (면체에 한함)	진균수	-	-
도료(페인트)	Micro digestion & ICP-OES analysis	총 수은 함유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준용	도료(페인트)
도료(페인트)	IEC 62321-1	총 6가 크롬 함유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준용	도료(페인트)
도료(페인트)	EL241 환경표지인증	톨루엔, VOCs방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준용	도료(페인트)

### 3. 반려동물용품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 가.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민원 접수처 및 접수 현황

##### 1) 접수처

가) 반려동물용품 민원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 접수 현황

###### 가) 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간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불만사항 3,349건이 접수 됨(표 30)
- 제품 불량 및 부작용이 1,073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함
  - 제품 불량 예시 : 자동급식기 제품 불량, 애완용 유모차 바퀴 불량



- 배변용품, 하우스, 침구류, 식구류, 캐리어 등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불만이 71.9%로 식품류(간식 및 사료, 24.9%)와 약품류(3.2%) 보다 높게 나타났음(한국소비자원, 2020)(그림 5)
-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불만 건수가 동물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내에 품목에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30. 반려동물 제품/용품 관련 피해유형 분류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25일 기준)	합계
제품불량 및 부작용	98(27.8%)	203(30.8%)	234(31.2%)	355(33.9%)	183(33.9%)	1,073(32%)
교환 및 환불 지연 거부	95(27%)	183(27.7%)	188(25.1%)	264(25.2%)	134(24.8%)	864(25.8%)
배송관련불만	85(24.1%)	13(21.1%)	197(26.3%)	251(24%)	136(25.2%)	723(21.6%)
AS 및 서비스 불만	47(13.4%)	93(14.1%)	98(13.1%)	140(13.4%)	65(12%)	443(13.2%)
기타	27(7.7%)	42(6.4%)	33(4.4%)	37(3.5%)	22(4.1%)	161(4.8%)
합계	352	660	750	1,047	540	3,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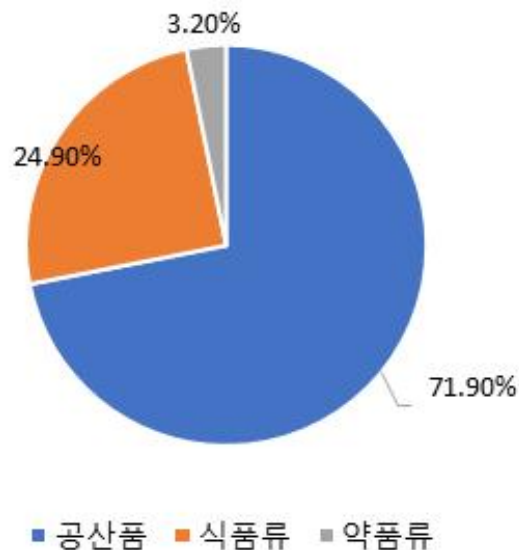


그림 5. 제품불량 및 부작용 중 피해 유형

## 나.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1) 구제절차

#### 가) 세부절차

- 반려동물용품 관련하여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 소비자 상담 :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 전에 상담 진행  
상담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
- 사업자 통보 :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
- 사실조사 :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
- 합의권고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다. 반려동물용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1) 분쟁 해결 기준

#### 가) 한국소비자원

- 동물사료는 “동물사료” 항목에,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항목에 분류되어 있었음(표 31)
-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동물사료에 대한 해결 기준(표 32, 33)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성분과 용도, 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준용

- 그 외 반려동물 용품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에 대한 해결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표 3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외품의 분류기준

업종	품종	해당품목
동물사료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의약외품	새일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표 3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분쟁유형	해결 기준	비고
이물혼입 함량, 크기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 가격을 보상함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치료비, 경비 미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표 33.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동물사료)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중량부족 부패, 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동물폐사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라. 타법사례(한국소비자원)

애완용품 샴푸 후 한쪽 눈 실명된 애완견 치료비 등 배상 요구

결정일자 : 2014년 5월 20일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9. 28.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애견 샴푸와 린스를 11,2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해 10. 2. 물품을 받아 10. 5. 저녁에 처음으로 신청인의 애완견에게 사용했는데, 당일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이 충혈되고 부어올라 같은 해 10. 7.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화학성분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심한 녹농균에 감염된 것 같으면서 입원 치료를 권유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1주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애완견의 왼쪽 눈은 시력을 잃은 상태인바, 같은 해 11. 18.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거의 5만 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용기 및 캡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샴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애완견의 피해가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 중 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3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을 약 10여 년 동안 기르면서 주 1회 정도 샴푸를 시켰으나 그 동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날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및 이 사건 애완견을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자극성 물질에 의한 각막의 손상 및 이로 인한 2차 감염성 전방 축농증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 다수의 정황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에 비록 미량이지만 피부의 민감한 부분에서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티트리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피신청인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한 수입품목신고서의 주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동물용이므로 사람에게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만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제19조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애완견 자체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민감성 등 체질적 소인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및 샴푸 시 신청인의 과실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애완견의 치료비 금 2,148,1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 1,503,6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 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4. 반려동물용품 관련 해외사례 조사

가. 해외 반려동물산업 시장 현황 및 관리체계(인증, 품질기준 등) 파악

##### 1) 해외 반려동물 산업현황

###### 가) 미국

- 현재 미국 내 전체가구 67%에 해당하는 8490만 이상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이 양육되고 있으며 그중 6340만 가구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음(데일리벳, 2020)
- 미국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연속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00조원에 달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111조원으로 예상(statista,2020)(그림 6)
- 일찍부터 반려동물 문화와 소비한 미국은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가 꾸준히 발생(비비타임즈, 2020)
-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일반 산업과 비슷한 형태이며 인간 산업의 동향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임(비비타임즈, 2020)

## 나) 일본

- 일본 펫푸드협회가 지난 2018년 일본 국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개·고양이 전국 사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5.4%인 11,200 가구 수이며, 전체 반려동물 수는 890만 마리
- 일본은 2013년(약 15조 2천억원)에서부터 2018(약 16조 4천억원)년까지 작은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20년 역시 약 16조 8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Yana Research Institute, 2019)(그림 7)
- 일본 내 전체 반려동물 수의 증감폭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반려동물 시장규모 증감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
- 일본 반려동물 식품협회에 따르면 매해 사육 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반려동물의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 건강보조기능이 있는 함유된 다양한 사료, 간식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다) 중국

- 중국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에 12%인 4,097 가구 수이다. 전체 반려동물 마리 수는 1억 마리임
- 중국의 반려동물시장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약 2조 3천만원 규모에서 2019년 11월에는 약 33조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Statista, 2019) 2020년에는 37조 4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음(데일리벳, 2018)(그림 8)
-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2013년 3억 8천 9백만 마리에서 2017년 5억 1천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7억 5천 5백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Statista, 2018)
- 반려동물을 위한 수입 식품이 중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브랜드가 반려동물 식품시장을 독점하는 추세(비비타임즈, 2020)
-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1억 마리를 넘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했으나, 국민 1인당 키우는 반려동물 수는 0.07마리에 불과하여 미국이 인구 100명당 51명

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중국은 6명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 1인당 평균 반려동물 마릿수는 낮은 점수를 기록(이학범, 2019)

#### 라) 독일

- 독일 반려동물용품 산업협회(IVH)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 전체 가구 중에 4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수는 약 2590만 마리임
- 독일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11년 약 5조800억에서 2019년 약 5조 8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Statista, 2020)(그림 9)
-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의 성장속도는 더디지만 반려동물 용품이 점차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음(데일리벳, 2018)
-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경제의 불황에서도 꾸준히 반려동물 용품이 소비되고 있음

#### 마) 영국

- 독일의 시장조사 연구기관 GFK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국 전체 가구 중에 40%인 1천3백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수는 6천 7백만 마리임
- 영국의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1년 약 6조 2900억원에서 2019년 약 10조 8600억원까지 증가하였음(Statista, 2020)(그림 10)
- 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음(농림부, 2016)

#### 바) 호주

- 호주 내 전체 반려동물 수는 약 2,850만 마리로 인구수(2,550만명)보다 많으며, 전체 가구의 6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이글벳, 2020)
- 호주의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012년 약 7조 9천억원, 2016년 약 13조 5600억원, 2019년 약 14조 6천억원으로 상승하였음
- 반려동물 관련 지출 분야 중 반려동물 용품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4번째 지출분야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호주의 특성 상 주택에서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며 한 마리의

반려동물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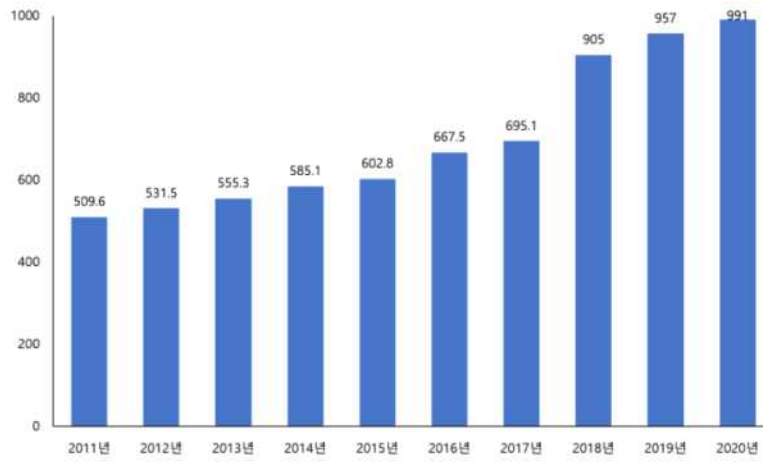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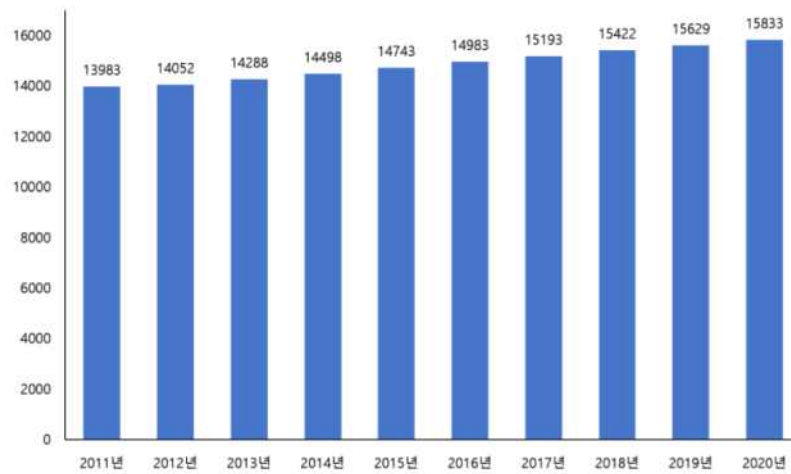


그림 7. 일본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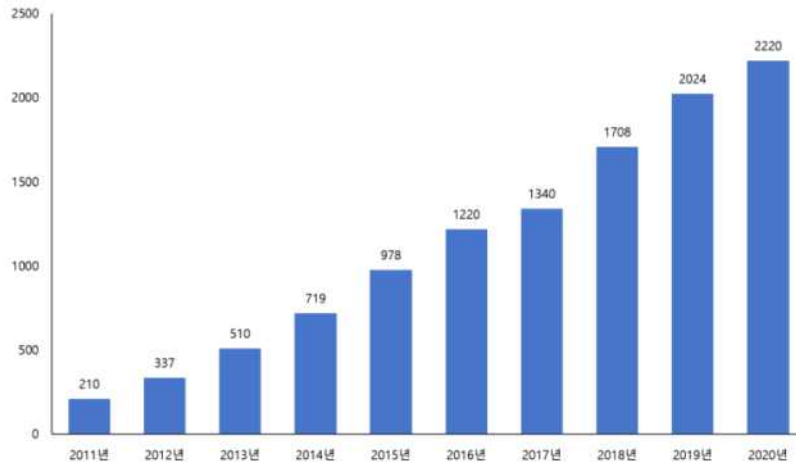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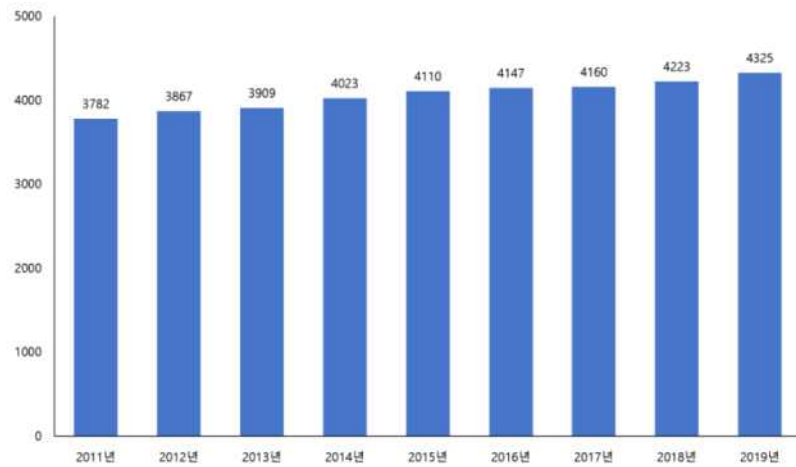


그림 9. 독일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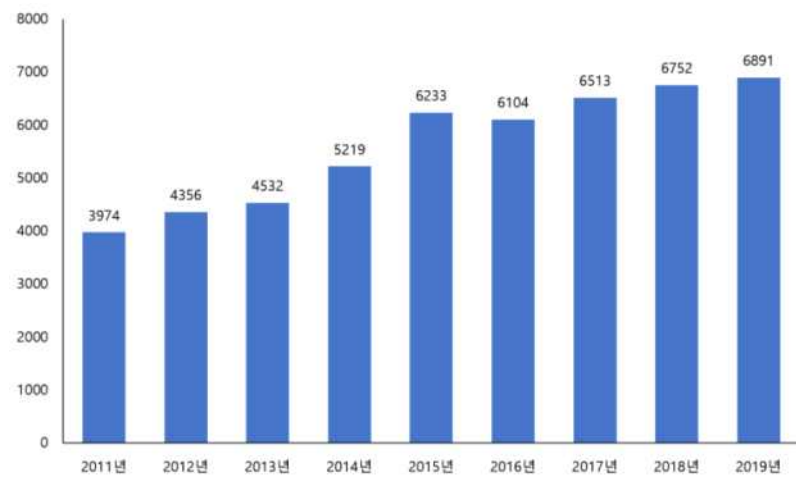


그림 10. 영국 반려동물 시장규모 추이(단위 : 백만 파운드)

2) 관리체계

가) 정부 관리체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역시 동물약품, 의약외품, 사료 등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에 대해 뚜렷한 분류체계와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나) 민간 관리체계

- 해외의 비영리단체나 시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시험 진행(표 34)

표 34. 해외의 공산품 반려동물용품을 인증하는 기관

국가	기관명	특징
미국	CPS (Center for Pet safety)	- 미국의 비영리단체 - 검사품목 : 가슴줄, 차량용 시트, 캐리어 - 제품에 인위적인 무게나 압력을 가하여 파손되는 시점을 측정하여 성적을 부여하거나 자동차 사고 시 가해지는 충격량을 인위적으로 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
	TTL laboratories	- 미국의 시험분석기관 - 장난감 분석을 하던 회사로서, 현재 아동 장난감 이외에 원자재 및 소비재, 보석류, 동물용 공산품에 대한 성분 및 기계적 분석을 진행 - 검사품목 : 동물용 공산품(장난감, 목줄, 가슴줄, 리드줄, 켄넬, 침대, 브러쉬, 빗, 옷) - 물리적인 기계 테스트를 통한 안전성검사
독일	TÜV SÜD(티유브이슈드)	- 독일에 본사를 둔 민간 감독기관으로 50개 국가, 1,000여 개 지역에서 운영 - 검사품목 : 동물용 의약품, 공산품 - 유독성, 안전성 등에 대해 검사 실시
	HBM	- 독일에 본사를 둔 제품제조판매 및 시험 기관으로 60개 국에 자회사 및 영업점 보유 - 독일 최초의 EMC alc 장비 안전을 위한 인가를 받은 연구실 - 물리적 성능 테스트 진행

영국	Interte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에 본사를 두었으며 100여 개 국가, 1,000여 개 지역에 시험소 및 사무소를 운영하는 범세계적 시험 기관</li> <li>- 반려동물 용품의 품질과 안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전문 지식과 업계 통찰력을 제공하여 제조 업체 및 소매 업체가 반려동물 용품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검사품목 : 동물식품, 공산품(식기 및 물그릇, 고양이 스크래치용품, 고양이 화장실, 의복, 가구, 침대, 그릇, 가슴줄, 목줄, 리드줄, 개집 및 켄넬, 그루밍도구, 장난감, 머즐)</li> <li>- 카드뮴 및 납 함량, 타액 견뢰도, 식기세척 사용 여부, 식품등급(FDA, EU, LFGB), 식품영양소 및 첨가제 여부, 중금속 함량 등 시험분석</li> </ul>
일본	JPP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비영리 사단법인</li> <li>- 반려동물용품 안전성에 대해 검사외에 여러 가지 활동 수행</li> <li>- 개, 고양이, 관상어, 작은 새, 동물, 곤충, 파충류 등 반려동물 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성분 또는 원재료, 사용 방법,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애완 동물 용품 통일 표시 가이드 라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li> <li>- 검사품목 : 동물식품, 동물용 공산품에 대해 검사</li> <li>- 반려동물용품취급사 민간자격제도를 실시하여 대중에게 올바른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시도</li> </ul>

나.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해외 사용실태 및 안전관리 기준 조사

1)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 사례

가) 안전관리 기준

- 미국, 영국 반려동물문화 선진국에서도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사료

외의 반려동물용품에 대해 의무적인 검사절차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민간 단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 기준 및 사용 강령에 대한 규제가 일부 존재함 (표 34)

#### 나) 사고 사례

- 유럽이나 북미 등지에서 목줄, 가슴줄이 풀린 맹견이나 타 반려견에 의하여 타인의 반려견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
- 스페인 토르토사(Tortosa)에서 목줄이 풀린 맹견에 의하여 말티푸와, 슈나우저가 목숨을 잃었으며 그 주인도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Taylor, 2020)
- 캐나다 너나이모(Nanaimo)에서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Garland, 2020)

## 2) 전기충격 짚음방지기

### 가) 사용여부

- 사용금지국가 : 영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
- 사용허용국가 :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핀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호주(5개주) 등

### 나) 호주

- 동물(개, 고양이)의 연령이 6개월 이상이며, 수의학적 검사로 신체·기질을 평가하여 적절한지 확인 후 사용, 하루 12시간 이하 적용
- 짚음방지 목적의 경우 수의사나 자격 있는 훈련사, 또는 그들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규정
-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유통정보를 명확히 기록

### 다) 유럽

- 전기충격 목걸이 제조협회(ECMA, Electronic Collar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전기충격 짚음방지기 사용 강령을 마련
  - ECMA의 사용 강령은 유럽 및 미국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준용하고 있음

## ECMA

### 1. 개요

이 강령의 목적은 개 또는 고양이에게 전기충격 목걸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 표준을 명시하는 것이다.

본 강령과 조항은 개나 고양이에게 전기충격 목걸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 3. 정의

I. 전기충격 목걸이(Electronic collar) : 개나 고양이에게 전기자극을 가할 수 있는 동물 목걸이

II. 공인 전기충격 목걸이(Authorised electronic collar)

a. 개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

i. 원격 훈련용 목걸이(a remote training collar)

ii. 짖음통제 목걸이(a bark control collar)

iii. 억제 목걸이(a containment collar)

b. 고양이와 관련하여, 억제목걸이

III. 짖음통제 목걸이(Bark control collar) : 개의 짖는 행위를 개선하도록 만들어진 목걸이로 짖는 소리에 의해서만 활성화된다.

IV. 원격 훈련용 목걸이(Remote training collar) : 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설계되고 송신기를 통해 사람에게 의해 작동하는 전기충격 목걸이

V. 억제 목걸이(Containment collar) : 억제시스템을 통해 동물을 억제하는 전기충격기

VI. 억제시스템 : 유선 혹은 무선시스템으로 동물을 특정 영역으로 억제하는 방법

(중략)

### 4. 전기자극 강도

사용자는 조작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를 위한 최상의 훈련 방법을 수립해야하며 항상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침범, 최저한의 불쾌함(LIMA, Least Intrusive Minimally Aversive)”, 최소한의 침범, 효과적인 행동 조정(LIEBI, Least Intrusive Effective Behavior Intervention)

### 5. 전기충격 목걸이의 사용시기와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

- 기본순종

- 목줄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할 시
- 추적을 포함한 많은 행동적 문제를 관리할 시
- 개를 통제, 의사소통 및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 노약자 또는 장애인 소유자
- 강하고 통제되지 않아 관리하기 쉽지 않은 개를 소유할 시

전기충격 목걸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

- 6개월령 미만인 개
- 임신중인 개
- 심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개로 수의사에게 승인받지 않은 상태
- 부상, 질병, 나이, 노화 등으로 인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개
- 해당자극에 대해 부적절한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개
-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관리할 때, 다만 전기충격 목걸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훈련사들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중략)

다. 주요 국가 반려동물용품 소비자보호(신청, 절차, 구제) 사례

#### 1) 미국

-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은 품목에 따라 다양한 연방기관에서 시행됨
- FTC(공정거래기구)를 포함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연방통신위원회(FC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FDA(식품의약국) 등 기관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짐
- FTC에는 8개의 부서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원보호, 광고 관행, 소비자 및 비즈니스교육, 집행, 마케팅관행, 소비자대응 및 운영, 재정관행, 소송 및 분석에 관한 부서가 존재
- FTC는 정보를 수집하고 상거래에 관여하거나 때때로 개인, 기업 등의 관행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온라인 등으로 불만이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됨
-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사례에 대해 검색은 잘 되지 않으나 일반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추측

## 5. 반려동물용품 관리체계 개선 및 산업육성 지원방안

가. 반려동물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안전 관리 및 인증기준 마련

1)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에 대한 품질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반려동물 용품 분류

- 국내에서 유통되고있는 반려동물용품의 제조성분과 용도에 따른 분류 체계화  
(표 35)

표 35.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분류체계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생활용품	의류	반려동물 의류 및 일반 섬유제품
	침구	매트, 방석, 담요, 타월, 텐트, 하우스(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이동용품	이동식 가방(슬링백, 백팩, 포대기), 이동용 케이지, 캐리어
	안전용품	리드줄, 가슴줄, 목줄, 입마개, 구멍조끼
	놀이용품	인형, 장난감, 스크래처
	식기	식기, 물병 및 기타 용기(합성수지제, 금속류)
	위생용품	배변패드, 기저귀, 고양이용 모래, 화장실
	소품	기타 소품류(브러쉬, 칫솔, 가위, 발톱깎이, 선글라스, 인식표 등)
일반전기용품	식기	고양이정수기, 자동급식기 등
	침구	펫드라이룸 등
	훈련용품	진동성 짚음방지기, 전기충격 짚음방지기 등
	놀이용품	모터 등 전기부품이 들어간 용품 등
	소품	강아지용 클리퍼 등
건축자재	도료(페인트)	페인트

(나) 품질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유해물질, 내구성역학, 내구성이화학에 대한 품질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표 36, 37, 38, 39, 40, 41, 42, 43, 44)

표 36. 반려동물 의류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기준	비고
유해 물질	pH	KS K ISO 3071	4.0 ~ 7.5	공통항목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	≤ 75 mg/kg	
	아릴아민	KS K 0734	≤ 30 mg/kg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ISO 18254-1(NPEO)	≤ 100 mg/kg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	각각 ≤50 mg/kg	가죽 부위
	주1)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종)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0.1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TS 16186	≤ 0.1 mg/kg	
	니켈(Ni)의 용출량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 0.5 µg/cm <sup>2</sup> /week	착용 시, 지속 접촉부위
내구 성 역학	붕합강도	KS K 0520 준용	≥ 98 N	붕제부위
	작은부품 부착강도	완구 부속서5.24.6	(50 ±2) N 견딜 것	작은 부품에 적용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	요건을 만족할 것	-
내구 성 이화 학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	4급	-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10	변퇴색, 오염 4급	-
	물견뢰도	KS K ISO 105-E01	변퇴색, 오염 4급	-
	마찰견뢰도	KS K 0650-1	건 4급, 습 3급	-
	치수변화율	KS K ISO 5077/ 6330	4 % 이내	-

1. 상기 시험항목 및 기준은 KC 안전기준준수 가정용섬유제품 기준 등을 근거로 책정함
2. 주1)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해당 제품 중 합성수지제 (플라스틱, 고무, 코팅 등) 부위에 적용함



표 37. 반려동물 침구류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기준	비고
유해 물질	pH	KS K ISO 3071	4.0 ~ 7.5	공통항목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	≤ 75 mg/kg	
	아릴아민	KS K 0734	≤ 30 mg/kg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ISO 18254-1(NPEO)	≤ 100 mg/kg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	각각 ≤50 mg/kg	
	주 <sup>1)</sup>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종)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0.1 %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TS 16186	≤ 0.1 mg/kg	가죽 부위
내구성 역학	봉합강도	KS K 0520 준용	≥ 98 N	봉제부위
	작은부품 부착강도	완구 부속서5.24.6	(50 ±2) N 견딜 것	작은 부품 적용
	코드 및 조임끈	EN 14682	요건을 만족할 것	-
내구성 이화학	일광견뢰도	KS K ISO 105-B02	4급	-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10	변퇴색, 오염 4급	-
	물건뢰도	KS K ISO 105-E01	변퇴색, 오염 4급	-
	마찰견뢰도	KS K 0650-1	건 4급, 습 3급	-
	치수변화율	KS K ISO 5077/6330	4 % 이내	-

1.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해당 제품 중 합성수지제 (플라스틱, 고무, 코팅 등) 부위에 적용함

2. 적용체중 구분: 1) 소형견 10 kg 이하, 2) 중형견 10 kg ~ 20 kg, 3) 대형견 20 kg 이상

표 38. 반려동물 안전용품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기준	비고
유해 물질	아릴아민	KS K 0734	≤ 30 mg/kg	지속 접촉 부위만 적용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A(NP), ISO 18254-1(NPEO)	≤ 100 mg/kg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	각각 ≤ 50 mg/kg	
	다이메틸푸마레이트	ISO/TS 16186	≤ 0.1 mg/kg	
	니켈(Ni)의 용출량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 0.5 µg/cm <sup>2</sup> /week	
내구성 역학	인장강도	KS K 0520 준용 KS K ISO 105-E04	≥ 적용체중 3 배	
내구성 이화학	땀견뢰도	KS K ISO 105-E04	변퇴색, 오염 4급	지속 접촉 부위만 적용 (가슴줄)

1. 적용체중 구분: 1) 소형견 10 kg 이하, 2) 중형견 10 kg ~ 20 kg, 3) 대형견 20 kg 이상

표 39. 반려동물 놀이용품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기준	비고
유해 물질	주1) pH	KS K ISO 3071	7.0 ~ 9.0	-
	주1) 폼알데아이드	KS K ISO 14184-1	≤ 75 mg/kg	-
	주1) 아릴아민	KS K 0147	≤ 30 mg/kg	-
	주2)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3종)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 0.1 %	-
	주2) 납		≤ 90 mg/kg	-
	주2) 카드뮴		≤ 75 mg/kg	-
내 구 성	인장강도 (부착강도)	KS K 0520 준용	≥ 100 N	-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10	변퇴색, 오염 4 급	-
	물견뢰도	KS K ISO 105-E02	변퇴색, 오염 4 급	-
	마찰견뢰도	KS K 0650-1	건 4급, 습 3급	-

1. 주1) 제품 내 섬유로 구성된 부분에 적용함.

2. 주2)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은 해당 제품 중 합성수지제(플라스틱, 고무, 코팅 등) 부위에 적용

표 40. 반려동물 위생용품-고양이용 모래 안전요건

시험항목	기준
기생충란	검출안됨

표 41. 반려동물 위생용품-배변패드 안전요건

시험항목		규격	기준	단위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산(PCP)		KS K 0733	0.5 이하	mg/kg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KS K 0733	0.5 이하	mg/kg
형광증백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41	불검출	-
포름알데히드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20 이하	mg/kg
총 납 및 총 카드뮴		KS K 0731	75이하	mg/kg
유해원소 용출	안티몬	KS G ISO 8124-3	60 이하	mg/kg
	비소		25 이하	mg/kg
	바륨		1,000 이하	mg/kg
	카드뮴		75 이하	mg/kg
	크롬		60 이하	mg/kg
	납		90 이하	mg/kg
	수은		60 이하	mg/kg
	셀레늄		500 이하	mg/kg
삼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	방수층을 뚫고 3 분 내에 삼출되지 않는다.	-
흡수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5호	흡수량은 검체 질량의 5배 이상이다.	-

표 42. 반려동물 위생용품-기저귀 안전요건

시험항목		규격	기준	단위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산(PCP)/ <sup>주1)</sup> 안감		KS K 0733	0.5 이하	mg/kg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안감		KS K 0733	0.5 이하	mg/kg
형광증백제/안감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41	불검출	-
포름알데히드/안감		유아용 섬유제품 부속서	20 이하	mg/kg
총 납 및 총 카드뮴/안감		KS K 0731	75이하	mg/kg
유해원소 용출	안티몬	KS G ISO 8124-3	60 이하	mg/kg
	비소		25 이하	mg/kg
	바륨		1,000 이하	mg/kg
	카드뮴		75 이하	mg/kg
	크롬		60 이하	mg/kg
	납		90 이하	mg/kg
	수은		60 이하	mg/kg
	셀레늄		500 이하	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0.1 이하	%

1. <sup>주1)</sup>안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면으로 구성상 최상위층에 있는 면 (기저귀는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반려동물 소품 - 합성수지제 제품 안전요건

구분	시험항목	규격	기준	비고
유해물질	<sup>주1)</sup> 프탈레이트가소제(3종)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0.1 %	-
	<sup>주1)</sup> 납		≤ 90 mg/kg	-
	<sup>주1)</sup> 카드뮴		≤ 75 mg/kg	-

1. <sup>주1)</sup>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은 해당 제품 중 합성수지제 (플라스틱, 고무, 코팅 등) 부위에 적용함.

표 44. 반려동물 소품-면봉 안전요건

시험항목	기준	단위
면체와 축의 거리	축의 끝과 면체 끝의 거리가 1 이상	mm
축간 거리	면체가 덮여지지 않은 부분이 40 이상	mm
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나무재질 축	적합	-
축의 강도/나무재질 축	적합	-
포름알데히드	16 이하 (면체에 한함)	mg/kg
일반세균	300 이하 (면체에 한함)	CFU/g
진균수	300 이하 (면체에 한함)	CFU/g

3)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허용여부 및 안전관리기준 설정

가) 전기충격 빗음방지기

(1) 정의

- 전기충격 빗음방지기 : 반려견에게 사용되는 빗음방지기 중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의 기기
- 빗음방지기 : 공동주택이나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반려견 빗음 방지도구 및 관련 기기

(2) 성능 기준

- 사람과 개의 전기저항력을 비교 및 고려(표 45)
- 전류세기에 따른 위험 고려(topdogtips, 2018, Crane-club)(표 4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라 호신용 전자충격기 성능과 제품제조기준 고려(표 47, 48)

표 45. 사람과 개의 전기저항력(피부)

	사람(피부저항력)	개(피부저항력)
전기저항력	0.5kΩ~5kΩ	2kΩ~80kΩ (목 부근은 최대 640kΩ)

표 46. 생물체에 흐르는 전류세기에 따른 위험도

통과전류 크기	1mA	5mA	10mA ~20mA	50mA ~75mA	200mA
증상	약간 느낌	경련	근육 수축 및 지배력상실	사망위험	사망위험

표 47. 호신용 전자충격기 제품제조기준

1. 성능개조여부검사

구분	종목	검사 항목	검사 합격 기준
구조형식	전자 충격기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전류유지상태검사	·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3.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안전검사기준

구분	종목	검사 항목	검사 및 합격기준	검사 요령
구조형식	전자 충격기	1. 설계도면 일치여부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전원스위치·단속기·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재질검사	·1m 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3. 발사장치 여부	·발사하는 장치가 없을 것 (치안목적용 제외)	
		4. 제조번호 등 표시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 (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5. 전자충격기의 전체길이	·전체길이는 60cm 이하일 것(치안목적용 제외)	
안전도 시험		1. 실효전력 (OUTPUT POWER)	·10W 이내일 것	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사한다.
		2. 절연상태	·AC 5,000V에서 0.5mA 이내일 것	절연상태 측정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3. 실효전류 (RMS: Root Mean Square)	·0.05A 이내일 것	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검사한다.
	4. 최대전압 (Maximum Voltage)	·60,000V 이내일 것	
	※ 실효전력, 실효전류 측정시 직류(DC) 저항 4000 내지 4500(Ω)을 걸어서 측정할 것		

표 48. 호신용 전자충격기(사람 대상) 성능 기준

구분	호신용 전자충격기
실효전력	10W이내
절연상태	AC 5,000V에서 0.5mA 이내
실효전류	0.05A 이내
최대전압	60,000V이내

(3) 사용법 기준

- 기기를 사용하여 교육할 경우 효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올바른 사용법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ECMA 사용 강령 준용

<p>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li> <li>○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li> <li>○ 실외에서 맹견과 동반할 때</li> <li>○ 보호자 중 반려견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노약자 또는 장애인</li> <li>○ 기타 반려견 중 짖는 소리가 크고 통제와 관리가 쉽지 않을 때</li> </ul> <p>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을 금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견이 6개월 미만인 어린 개일 때</li> <li>○ 반려견이 임신중일 때</li> <li>○ 심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반려견으로 수의사에게 전기충격 짖음방지기의 사용자제를 권고 받았을 때</li> </ul>
--



- 부상, 질병, 나이, 노화 등으로 인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반려견
- 전기자극에 대해 강한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반려견
- 전기충격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다만 전기충격 짚음방지기가 훈련사들에 의해 활용될 때는 제외함

3.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기기 사용을 해야 함

- 전기충격 짚음방지기는 반려견의 목 이외의 다른 부위에는 착용하지 않아야 함
- 착용하는 반려견의 목과 그 주변부의 털길이가 3cm이상 되어야 함
  - 표45, 46을 참고하여 전기충격 짚음방지기가 작동하였을 경우, 가벼운 경련 정도만 발생할 수 있도록 기준전력 및 기준전압 설정
- 착용하는 반려견의 목과 그 주변부의 피부에는 상처나 고름, 물집, 피부병이 없어야 함
- 착용하는 반려견의 목과 그 주변부는 젖은 상태이어서는 안되며 충분히 건조한 상태여야 함
- 전기충격 짚음방지기의 작동시간은 10초 이내로 제한함
- 일일 사용시간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나) 목줄, 가슴줄, 입마개

(1) 정의

- 목줄 : 반려견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반려견의 목 주위에 장착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함
- 가슴줄 : 반려견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반려견의 가슴과 등 주위로 장착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함
- 입마개 : 개물림에 의한 물리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미함

(2) 성능 기준

- 반려견의 행동통제 및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이므로 물리적 성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반려견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3) 사용법 기준

- 반려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항목과 개물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항목을 특히 고려해야 함

- 목줄, 가슴줄 -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함

- 반려견의 행동을 제어해야 할 때
- 반려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 반려견과 야외 활동을 할 때

2.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사용을 해야 함

- 반려견의 호흡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조이지 않아야 함
- 반려견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야 함
- 착용 전 리드줄과의 연결부위 및 고정장치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입마개 -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함

- 반려견의 행동을 제어해야 할 때
- 반려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 야외 활동을 할 때
-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우려 될 때

2.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사용을 해야 함

- 착용 후 반려견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착용 후 반려견이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함
- 반려견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야 함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중 안전용품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분류

가) 안전인증대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0호) 준용
- 대상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 목줄, 가슴줄, 리드줄, 입마개

나) 안전확인대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1호) 준용
- 대상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 구멍조끼, 짓음방지기, 이동용 케이지, 배변패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반려동물용품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1)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가) 분쟁해결 기준 마련

- 성분 및 용도에 따라 분류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준용
  - 의류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의복류’항목 적용(표 49)
  - 침구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가구’항목 적용(표 50)
  - 이동용품, 안전용품 : 성분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축산자재’(표 51), ‘문구’(표 52) 항목에 적용
  - 놀이용품 : 성분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가구’(표 51), ‘문구’(표 52), ‘아동용품’(표 53) 항목에 적용
  - 식기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주방용품’ 항목에 적용(표 54)
  - 용품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생활위생용품’항목을 적용(표 55)
  - 일반전기용품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가전제품’항목을 적용(표 53)

표 49.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의복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③환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①무상수리 → ②교환 →③환급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 조각, 실오라기 등)	①무상수리 → ②교환 →③환급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①무상수리 → ②교환 →③환급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①무상수리 → ②교환 →③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맞춤, 환급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배상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인 경우 공임까지 배상
<p>○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li> <li>-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li> </ul> <p>○ 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함.</li> </ul> <p>○ 보상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li> </ul> <p>○ 하자원인 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li> </ul> <p>○ 교환 및 환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li> <li>-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li> <li>-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함.</li> <li>- 환급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함.</li> </ul>		

표 50.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가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줌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문짝 힌 -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약취 등 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격치수허용오차(±5mm이상)	제품교환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소 파품질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p>균열, 스프링불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li> <li>-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li> <li>-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li> <li>- 유상수리</li> </ul>	
<p>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ul>	<p>제품교환</p>	
<p>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p>	<p>구입가 환급</p>	
<p>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p>	<p>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p>	
<p>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p> <p>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li> <li>.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li> </ul> </li> <li>-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 3일 전까지</li> <li>. 배달 1일 전까지</li> </ul> </li> </ul> <p>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li> <li>-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함.</li> <li>. 실손해배상</li> <li>.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li> <li>.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li> <li>- 선금의 배액</li> <li>-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li> </ul>	<p>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함.</p> <p>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p>
<p>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보증기간 이내</li> <li>.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li> <li>.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li> <li>-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li> <li>.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li> <li>-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li> </ul>	

표 5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축산자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품질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표 52.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문구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표 53.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가전제품, 아동용품

분쟁 유형	해결기준	비고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수리불가능 시 - 교환불가능 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	



<p>-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p> <p>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보증기간 이내</li> <li>.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li> <li>.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li> <li>-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li> </ul>	<p>고한도 :구입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li> <li>.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li> <li>-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함.</li> <li>-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 (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li> </ul>
<p>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p>	<p>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p>	
<p>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p>	<p>제품교환</p>	

표 5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주방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p>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p>	<p>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p>	
<p>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 발생 시</li> <li>-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li> <li>- 수리 불가능 시</li> <li>-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수리</li> <li>- 제품교환</li> <li>- 제품교환</li> <li>- 구입가 환급</li> </ul>	

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표 55.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생활위생용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2)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마련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용

- 제1조: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올바른 구매선택을 유도
- 제3조: 거짓되고 기만적인 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 국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1) 반려동물용품 산업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가) 반려동물용품 산업연구를 위한 학술연구 전문단체나 민간연구법인 설립지원 추진

-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반려동물영양협회, 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협회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상업과 제조업, 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산업의 흐름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나 학술단체가 부족
- “반려동물용품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필요

나) 반려동물용품의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대중화 홍보 및 교육

-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안전인증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갖추는 동시에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필요
- 반려동물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용품에 대한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행사나 용품전시행사 등을 개최

다) 반려동물용품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및 산업 협력 기관 개편

- 반려동물 산업 협력 기관을 지정하여 반려동물 용품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필요로 함
- 운영과 집행을 할 자치기구의 협조뿐 아니라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 관련 단체 혹은 학교와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려동물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나가기에 효과적인 현장대응과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증폭하여 인력의 증진을 통해 대비해두어야 함

2)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 품질 및 안전성 관리·점검에 대한 정식기관 설립 혹은 지정제도 마련

가) 반려동물용품 품질 및 안전성 관리기준 연구 지원

- 반려동물용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동물식품을 제외한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을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함
-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제도 마련

3) 반려동물용품 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마련

가) 반려동물산업 수출 정책 확립

- 국제적 수준의 반려동물용품 안전관리 기준 적용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반려동물 용품 업체들에게 관리기준을 강화
- 아직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제상황 속에서 국내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분류체계와 안전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이 된다면 선진화된 브랜드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려 볼 수 있음

나) 반려동물용품 수출 경쟁력 확보

- 반려동물용품의 차별화와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 시장을 노려 볼 수 있음

- 꾸준한 해외시장 조사를 하여야 전략적 수출이 가능하므로 kotra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의 실정과 제도를 파악하여야 함

####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석, 수출전략컨설팅 등 지원사업 발굴

##### 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독려

- 미국과 중국은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유럽권에서도 앞의 두 나라에 비해 큰 차이가 있진 않으나 꾸준히 성장
- 국내 반려동물용품 기업이 용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수출에 대한 인증을 하는데 있어 비용과 인력 부족과 같은 실무적 문제와 같은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안

-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산업구조 상 반려동물산업의 해외 진출은 필수이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반려동물용품과 안전인증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함
- 미국 Global Pet Expo, 중국 China International Pet Show, 독일 Interzoo, 일본Interpet 등 반려동물 관련 국제 박람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와 지원 필요

### III. 종합의견

- 1) 반려동물의 시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대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커지는 시장과는 달리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안전성 논란 주요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해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애견협회나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등이 민간인증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추후 더 많은 인증제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됨. 무분별한 반려동물용품 인증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을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성분과 용도 등의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연구와 분류를 통해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4)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법적인 안전인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간시험기관, 비영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었음. 유럽연합의 경우 반려견용 전기충격기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준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5)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국내외의 관리·분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비교하여 이를 적절히 국내 실정에 알맞게 준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다만, 세계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및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용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적은 편으로 국내 연구력만으로 체계화 해야 하므로 제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물로 도출된 결과물을 통해 그 항목을 세분화하여 용품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추후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1. 국민일보. (2020). 풍선에 매달고, 계로 겁주고…충격의 中반려견 학대영상
2. 농림축산식품부. (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3. 데일리벳. (2018). [2018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2 : 중국] 2020년까지 반려동물 의 료시장'14조원'
4. 데일리벳. (2018). [2018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9-독일] 반려견 세금, 연간 26만원
5. 데일리벳. (2020). [2020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1 : 미국] 시장규모 92조원, 8년 연 속 증가
6. 박성규. (2019). [펫코노미]가성비 입질…직구로 펫템 낚아요. 서울경제
7. 비피기술거래, 비피제이기술거래. (2020).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지침서. 비비타임즈
8. 소방청. (2019). 하루 6명꼴 개 물림사고로 119구급대 출동
9. 스냅타임. (2020). “왈!” 짖으면 전기가 ‘찌지직’…짖음방지기 ‘학대’ 논란.
10.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2020). 반려동물 성형수술, 명백한 동물학대
11. 시사중국어사. (2019). 중국의 반려동물, 성장과 학대라는 양날의 검
12. 신한카드. (2020). 펫코노미 시대,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다. 트렌드 정보
13. 위키트리. (2020). "고춧가루, 소 심장 1.5kg…" 먹방 금지된 중국, 반려견이 희생양됐다.
14. 이글벳. (2020). [2020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4 : 호주] 60%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15. 이학범. (2019). [2019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1-중국] 세계 2위 규모로 성장...가능성도 무한
16. 차민영. (2020). 쑥쑥 크는 온라인 반려동물용품 시장...코로나19 촉매될까
17. 최승근. (2020). 2조원 규모로 불어난 펫케어 시장, 핵심 트렌드는 '다양성'. 데일리안
18. KBS뉴스. (2019). 사람 잡는 개 소리, ‘충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19. 투데이신문. (2019). 경찰 전기충격기 맞먹는 ‘개짖음방지기’ 동물학대 논란…규제 수단 無.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21. 한국소비자원. (2020). 반려동물 제품·용품 관련 소비자 문제 현황과 개선 의견
22. Andrew Garland. (2020). Nanaimo woman says puppy killed by off-leash dog, asks owner to come forward
23. Doggar.(2020). How many volts in a dog shock collar? Dog shock collar guide. Pet dog world

24. ECMA. (2012). ECMA Code of Practice for the use of Electronic Collars on Dogs and Cats
25. Jay Taylor. (2020). Fatal dog mauling in Tortos stirs controversy. In Maricopa.
26. J. A. Lines, K. van Driel, J. J. Cooper. (2013).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training collars for dogs.
27. Riepl,M. (2013).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training collars for dogs. Veterinary Record, 172(9),242-243.
28. Statista. (2018). Total number of pets in China from 2013 to 2022
29. Statista. (2019). Market size of pet related businesses in China from 2010 to 2019
30. Statista. (2020). Consumer spending on pets and related products in the 26. United Kingdom (UK) from 2005 to 2019
31. Statista. (2020). Pet market sales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1 to 2020, by 27. category
32. Statista. (2020). Revenues made from pet supply sales in Germany from 2006 to 2019, by product group
33. topdogtips. (2018). An Evidence-based Guide to Dog Shock Collars
34. Yana Research Institute. (2019). Pet Related Business in Japan: Key Research Findings 2019
35. 강아지대통령.<https://dogpre.com>
36.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https://data.kostat.go.kr/sbchome/intro.do>
37. 펫클럽.[www.petclub.co.kr](http://www.petclub.co.kr)
38. PS반려동물제품인증제. [www.petsafety.co.kr](http://www.petsafety.co.kr)
39.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www.korea-edu.net](http://www.korea-edu.net)
40. 한국펫산업소매협회.[www.kpira.or.kr](http://www.kpira.or.kr)
41. 독일 반려동물용품 산업협회. <https://www.ivh-online.de/>
42.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 <https://www.americanpetproducts.org/>
43. 일본 펫푸드협회. <https://petfood.or.jp/>
44. CPS(Center for Pet Safety). <https://www.centerforpetsafety.org/>
45. Crane-Club. [www.crane-club.com/study/crane](http://www.crane-club.com/study/crane)



\* 별지 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료 종류와 범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제5조 관련)		
사료종류	명 칭	
1. 결착제	가. 천연결착제	구아검, 리그닌술폰산염(리그닌선폰산염), 셀룰로오스, 송진, 젤라틴, 천연검, 카제인, 콜라겐
	나. 합성결착제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제인나트륨, 폴리메틸로카바마이드,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다. 합제	천연결착제 합제, 합성결착제 합제, 결착제 합제[천연결착제와 합성결착제의 합제를 말함]
2. 유화제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레시틴, 메타인산나트륨,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스테아릴젯산나트륨, 스테아릴젯산칼슘,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인산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유화제 합제, 스테아릴젯산나트륨	
3. 보존제	가. 산미제	DL-사과산, DL-주석산, L-주석산, 개미산, 개미산수소칼륨, 개미산칼슘, 구연산, 글루콘산, 글루콘산칼슘, 낙산(부티르산), 낙산나트륨, 낙산칼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인산, 젯산, 초산, 푸말산(푸마르산), 호박산
	나. 항응고제	실리카(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칼슘, 염화주석, 텔크, 화이트카본, 활성탄
	다. 항산화제	레스베라트롤, 몰식자산, 몰식자산프로필,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비타민 E(dl- $\alpha$ -토코페롤), 에톡시킨, 케르세틴
	라. 항곰팡이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마 합제	산미제 합제, 항응고제 합제, 항산화제 합제, 항곰팡이제 합제, 보존제 합제[산미제부터 항곰팡이제의 합제를 말함]
4. 아미노산제	DL-메치오닌(DL-메티오닌),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HA),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DL-알라닌, DL-트레오닌철, DL-트립토판, L-글루타민산, L-라이신, L-라이신염산염, L-라이신황산염, L-메치오닌(L-메티오닌), L-발	

사료종류		명 칭
		린, L-시스틴, L-알기닌(L-아지닌, L-아르기닌), L-이소로이신, L-트레오닌, L-트립토판, L-히스티딘, L-히스티딘염산염, L-시스테인염산염, 아미노초산(글라이신), 타우린, 아미노산제 합제, L-로이신
5.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L-카르니틴, 나이아신(니아신·니코틴산), 니코틴산아미드, 비오틴(비타민H), 비타민A분말(레티놀분말), 비타민A유(레티놀오일), 비타민B1, 비타민B1나프탈린-1,5-디설포산염(치아민 나프탈린-1,5-디설포산염),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치아민 라우릴황산염), 비타민B1로단산염(치아민 티오시안산염), 비타민B1염산염(치아민 염산염), 비타민B1질산염(치아민 질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리보플라빈 5'-인산에스테르나트륨), 비타민B6염산염(피리독신 염산염), 비타민B12(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C(L-아스콜빈산), 비타민C칼슘염(L-아스콜빈산 칼슘염), 비타민C-2인산마그네슘염(L-아스콜빈산-2-인산에스테르 마그네슘), L-아스콜빈산-2-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비타민C나트륨염(L-아스콜빈산 나트륨염), 비타민D분말(칼시페롤분말), 비타민D2(칼시페롤), 비타민D3(콜레칼시페롤), 비타민E(dl- $\alpha$ -토코페롤), 비타민E아세테이트(dl- $\alpha$ -토코페릴아세테이트), d- $\alpha$ -비타민E아세테이트, 비타민K1(파일로퀴논) 비타민K3(메나디온), 비타민K3아황산나트륨염(메나디온 아황산나트륨염), 비타민K3아황산니코틴아미드(메나디온 아황산 니코틴아미드), 비타민K4(아세트메나프톤), 염화콜린, 엽산, 이노시톨, 주석산 수소콜린, 판토텐산, 프로비타민A( $\beta$ -카로틴), 비타민제 합제
6. 효소제	가. 당분해효소	글루코아밀라아제, 락타아제, 리소짐, 말토게닉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엑소글루카나아제, 엔도글루카나아제, 키시라나제, 키토사나아제, 펙티나아제, 헤미셀룰라아제, $\alpha$ -아밀라아제, $\beta$ -글루카나아제, $\beta$ -만난아제, $\beta$ -아밀라아제
	나. 지방분해효소	리파아제
	다. 인분해효소	피타아제
	라.	산성(곰팡이성)프로테아제, 식물성프로테아제[브로멜라인 포

사료종류	명 칭
단백질분해효소	합], 알칼리성(세균성)프로테아제, 중성프로테아제
나. 합제	당분분해효소 합제, 지방분해효소 합제, 인분해효소 합제, 단백질분해효소 합제, 효소제 합제[당분분해효소부터 단백질분해효소의 합제를 말함]
7. 미생물제	가. 유익균 락토바실러스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커바투스,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페롤렌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로돕슈도모나스 캡슐레이타, 바실러스 렌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세레우스[도요이에 한함], 바실러스 코아글란스,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 바실러스 푸밀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박테리움 서모필럼, 비피도박테리움 슈도롱검,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 엔테로코커스 락티스, 엔테로코커스 써모필러스, 엔테로코커스 웨시엄,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컴, 페디오코커스 세레비시에, 페디오코커스 애시디락티시,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 유익균 배양물
나. 유익곰팡이	모나스커스 퍼퓨리어스, 아스퍼질러스 나이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다. 유익효모	맥주효모[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에 한 함], 양조효모[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에 한 함], 잔토펴로마이세스 덴드로하우스, 제빵효모[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에 한 함], 조사건조효모, 토룰라효모, 피키아 파리노사, 효모배양물[유익효모의 배양물에 한 함]
라. 박테리오파지	살모넬라 갈리나룸 박테리오파지,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 박테리오파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박테리오파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박테리오파지
마. 합제	유익균 합제, 유익곰팡이 합제, 유익효모 합제, 박테리오파지 합제, 미생물제 합제[유익균부터 박테리오파지의 합제를 말함]
8. 가. 착향료	천연착향료[별표 6에서 허용하는 천연착향료에 한 한다], 합

사료종류		명 칭
향미제		성착향료[별표 6에서 허용하는 합성착향료에 한 한다]
	나. 감미료	감초, 과당, 네오탐, 네오헤스페리딘디하이드로칼콘, D-소르비톨, 맥아당(말토오스, 엿당), 사카린나트륨, 설탕(자당·백당·수크로오스), 스테비아, 스테비올배당체, 아니스, 원당,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캐러멜(카라멜), 캐롭, 포도당(글루코오스), 효소처리스테비아
	다. 조미료	강황(울금, 심황), 계피, L-글루타민산나트륨, 마늘, 생강, 안젤리카,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카레, 캐러웨이, 향신료올레오레진
	라. 합제	착향료 합제, 감미료 합제, 조미료 합제, 향미제 합제(착향료부터 조미료 합제를 말함)
9. 비단백태질소 화합물		당밀요소, 디우레이드이소부탄, 비우렛, 요소, 인산암모늄, 인산요소, 전분요소, 황산암모늄,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합제, 염화암모늄
10. 규산염제		견운모, 고령토(카올린), 규조토, 맥반석, 몬모릴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세피올라이트, 에타폴자이트, 일라이트, 제올라이트, 흑운모, 규산염제 합제
11. 완충제		산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소다회), 중조(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완충제 합제
12. 착색제	가. 천연	천연착색제[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색소에 한한다]
	나. 합성	아스타키산틴(아스타잔틴), 아포카로텐산 에스테르, 칸탄산틴(칸타잔틴)
	다. 합제	천연착색제 합제, 합성착색제 합제, 착색제 합제
13. 추출제	가. 초목 추출물	가시오갈피추출물, 감초추출물, 금잔화추출물(루테인, 마리골드 색소 포함), 라즈베리추출물, 목초액, 밀크씨슬추출물, 아티초크추출물, 우엉추출물, 유카추출물, 차추출물, 천연비타민(베타인), 치커리추출물, 칩뿌리추출물, 켈라야(켈레아), 타히보추출물, 황금뿌리추출물
	나. 종자 추출물	달맞이꽃씨추출물, 자몽종자추출물, 포도종자추출물, 해바라기씨추출물, 호로파추출물, 참깨유추출물
	다. 세포벽 추출물	글루칸, 만난

사료종류	명 칭	
	라. 동물 추출물	누에추출물, 키토산, 키틴
	마. 기타	과실 및 과채추출물, 노간주열매추출물, 마늘추출물, 반추위추출물, 생강추출물, 콜라너트추출물, 타우마틴(토마틴), 프로폴리스추출물, 케슈너트셀추출물, 해초, 해조추출물, 효모추출물
	바. 합제	추출제 합제
14. 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대두올리고당을 포함], 겐티오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올리고당 합제
15. 기 타		글루코사민, 글루콘산나트륨, 락툴로스, 라우린산, 시스테아민염산염,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포함], 비테인염산염(베타인염산염), 팔미트산, 코엔자임Q10, 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
16. 혼합제		혼합성 보조사료[둘 이상의 보조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보조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제6조 제2항 관련)

사료종류	축종	명칭
1. 양축용 배합사료	가. 고기소	번식용어린송아지, 번식용중송아지, 번식용큰송아지, 종모우, 고기소임신우, 고기소포유우, 비육용어린송아지, 비육용중송아지, 큰소비육전기, 큰소비육중기, 큰소비육후기
	나. 젖소	젖소어린송아지, 젖소중송아지, 젖소큰송아지, 젖소임신우, 젖소종모우, 비유초기젖소, 비유중기젖소, 비유말기젖소, 건유기젖소, 고능력젖소
	다. 돼지	포유자돈, 이유돈 전기, 이유돈 후기, 육성돈 전기, 육성돈 후기, 비육돈 전기, 비육돈 후기, 번식용 웅돈, 번식용 모돈, 임신모돈, 포유모돈
	라. 닭	산란용어린병아리, 산란용중병아리, 산란용큰병아리, 육용

사료종류	축종	명칭
		종계어린병아리, 육용종계중병아리, 산란계산란전, 산란계산란초기, 산란계산란중기, 산란계산란말기, 산란종계, 육용종계, 육계전기, 육계후기, 육계출하
	마. 오리	육용오리전기, 육용오리후기, 종오리용어린오리, 종오리용육성오리, 종오리용산란오리
	바. 개	어린개, 육성개, 큰개
	사. 꿩	어린꿩, 육성꿩, 큰꿩
	아. 말	어린말, 육성말, 큰말
	자. 메추리	어린메추리, 육성메추리, 큰메추리, 산란메추리
	차. 사슴	어린사슴, 육성사슴, 큰사슴
	카. 양	어린면양, 육성면양, 큰면양, 어린염소(산양), 육성염소(산양), 큰염소(산양)
	타. 오소리	어린오소리, 육성오소리, 큰오소리
	파. 칠면조	어린칠면조, 육성칠면조, 큰칠면조
	하. 타조	어린타조, 육성타조, 큰타조, 산란타조
	거. 토끼	어린토끼, 육성토끼, 큰토끼
	너. 거위	어린거위, 육성거위, 큰거위, 산란거위
	더. 노새	어린노새, 육성노새, 큰노새
	러. 당나귀	어린당나귀, 육성당나귀, 큰당나귀
	머. 꿀벌	꿀벌
	버. 지렁이	지렁이
		서. 배합사료원료
어. 특수배합사료		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 양축용 영양보충제, 양축용 건강보조제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가. 전체	축종별로 구분 * "프리믹스용 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배합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사료로서 비타민제와 미량광물질류를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아미노산제 등의 보조사료와 부형제를 혼합하여 균질화한 것을 말함
3. 대용유용 배합사료	가. 전체	축우용대용유, 양돈용대용유, 주문용대용유 * "대용유용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어린(갓난)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로서 교차오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대용유용배합사료 제조시설(규칙 별표 1)에서 주로 유당, 유장, 유조제품을 혼합하고 필요

사료종류	축종	명칭
		에 따라 비타민제 등의 보조·단미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를 말함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가. 고기소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라 함은 섬유질사료를 분쇄,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수분조절 또는 기호성 증진을 위하여 곡류, 강피류, 박류, 식품가공부산물류, 광물질류 또는 보조사료를 첨가한 후 균제, 효모 등을 이용하여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것으로서 조섬유의 함량이 건물기준으로 15% 이상인 것(다만, 큰소비육 단계의 경우 10% 이상)
	나. 젖소	
	다. 기타 반추동물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가. 실험용동물	실험용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나. 애완용동물	애완용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다. 사육하는 동물	사육하는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라. 수산동물	어종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어종별 및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 반건조배합사료(SEP, Soft Extrude Pellet 혹은 Semi-moist pellet<반습사료>)라 함은 수분함량이 25% 내외로 70°C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각처리 후 포장되어 냉동 유통되는 양식수산동물용 배합사료로서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운반시 뭉게지기 쉽고, 특히 여름철에는 운반 및 보관시 산패·변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저온 보관이 필요함

\* 별지 2 : 유럽연합 ECMA 번역본

ECMA 규범
개와 고양이에게 전기 목걸이를 사용하기 위한 규범
목차
1. 소개
2. 전기 목걸이 사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3. 정의
4. 전기자극의 강도
5. 언제 전기 목걸이를 사용하고 언제 사용이 금지되는가?
6. 원격 훈련 프로토콜
7. 전기 목걸이에 대해 알려진 이슈
8. 압력 괴사
9. 억제 체계
10. 짚음 제어 체계
11. 고양이 억제 체계
12. 참고 및 추가적인 정보
부록 A. 전기 목걸이 사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부록 B. 일반적인 원격 훈련 프로토콜의 예
1. 소개
본 규범의 목적은 개나 고양이에게 전기 목걸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 표준을 지정하기 위함이다.
본 규범과 조항에 대해 개나 고양이에게 전기목걸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준수해야 한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행위는 개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들을 인간의 감수성과 충돌할 수 있다. 개에 대해 허락할 수 없는 행동은 신체적 제어나 훈련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훈련체계는 기초 복종명령을 개에게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훈련, 억제 그리고 짚음제어 체계는 훈련사들에게 개들의 삶의 질을 유지



하면서 이들의 허락되지 않은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미묘한 방법들이다. 개의 올바른 행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주인과 개 뿐만 아니라 이웃과 다른 동물에게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전기 목걸이 사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현재 EU에는 일반적인 동물복지법이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유럽권에서 동물에게 전기 목걸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한다. 영국의 예는 아래와 같다. 원본문은 부록 A를 참고하길 바란다.

### 사례

- 개와 고양이의 일반복지는 동물복지법에 의해 보호된다(잉글랜드, 웨일즈, 동물복지법 2006)
- 웨일즈의 관할권에서는 전기목걸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웨일즈 동물복지(전기 목걸이)(웨일즈)규정 2010)
- 영국은 개의 행동과 관련하여 전기 목걸이 사용에 대해 다음을 규정한다.
  - 소란스럽게 짖는 것(영국에서는 환경보호법(1990)에 의해 다뤄짐)
  - 공공장소에서 통제불능인 개(영국에서는 제3항제1호 위험견법(1991)과 견법 제 2항(1871)에서 다뤄짐)
  -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행위(영국에서는 ‘깨끗한 이웃 및 환경법(2005)의 일부로 ‘개 제어 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
  - 가축의 우려(영국 동물법 1971 제9항제1조)로 반려견을 살해하거나 상해하여 민사소송이 발생할 것을 방어하기 위함

만약 당신이 전기 목걸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당신의 관할권 내 사용 조건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

## 3. 정의

- I. 전기 목걸이 : 개나 고양이에게 전기자극을 가할 수 있는 목걸이
- II. 공인 전기 목걸이
- a. 개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 i. 원격 훈련 목걸이
    - ii. 짚음 제어 목걸이
    - iii. 억제 목걸이
  - b. 고양이와 관련하여서는 억제 목걸이를 의미한다.
- III. 짚음 조절 목걸이 : 목걸이를 착용한 개가 짚을 때만 작동하도록 조정된 전기 목걸이
- IV. 원격 훈련 목걸이 : 동물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사람이 조작 가능한 송신기를 통해 활성화
- V. 억제 목걸이 : 억제 체계 수단 중 하나로서 동물이 착용하는 전기 목걸이
- VI. 억제 체계 : 특정 범위에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동물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 VII. LIMA : 2001년 S.R. Lindsay에 의해 소개된 용어로 “최소한의 침해, 최저한의 혐오”
- VII. LIEBI : 2009년 J. O’Heare에 의해 소개된 용어로 “최저한의 침해로 효과적인 행동 조정”을 의미
4. 전기자극의 강도
- 사용자는 운영가이드를 참조하고 개에 대해 가장 좋은 훈련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이 훈련방법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자극이 최소한의 강도가 되어야 한다. 이는 LIMA와 LIEBI 알고리즘을 따른다.
5. 언제 전기목걸이를 사용하고 언제 사용이 금지되는가?
- 전기 목걸이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본 복종
  - 리드줄이 없을 때, 특히 리콜
  - 추격행동을 포함한 많은 행동문제를 통제할 때
  - 노약자나 장애를 가진 보호자로 훈련을 통해 개를 통제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어

려움이 있는 자

- 보호자가 강하거나 다루기 힘들어 개의 관리가 쉽지 않을 때

전기목걸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생후 6개월 미만의 개
- 임신 또는 수유중인 암컷
- 건강상 문제(특히 심장질환)가 있어 전기목걸이 사용에 대해 수의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 개가 혐오자극에 대해 부적절한 공격으로 반응할 경우
- 불안감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개의 행동문제를 관리할 때(단, 전기 목걸이 사용에 능숙한 훈련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외)

ECMA는 연간 수의학적 검진을 통해 개와 고양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권장한다.

#### 6. 원격 훈련 프로토콜

전기 목걸이에 대한 교육과 사용은 ECMA 멤버 가이드라인이나 자격을 갖춘 개 훈련사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전기목걸이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훈련기술이 있다.

- a. **주의력 훈련**은 개가 훈련사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명령 준수를 할 때까지 저강도 전기 자극을 사용한다.
- b. **억제 훈련**은 충분히 높은 강도의 전기 자극을 사용하여 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한다.

전기 목걸이 사용과 관련하여 ECMA 멤버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공통된 부분이 있다

- 전기목걸이를 장착한 개의 소개
- 최소 인식수준 결정

- 주의력 훈련
- 훈련의 신뢰성 통합(더 긴 기간, 다른 장소에서의 더 강한 오락활동)
- 명령 소개(예를 들어 옆드려)
- 기본복종 훈련 시작(리콜, 기다려, 멈춰 등)
- 주의 또는 억제 훈련을 이용한 허락되지 않은 행동 대등
- 교육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ECMA 회원 교육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 회원의 지침 가이드 또는 부록 B를 참고한다.

#### 7. 전기 목걸이에 대해 알려진 이슈

개가 훈련 중 자극을 다음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위험이 가끔 인용되는데 이는 개가 훈련 중 자극을 우연한 물건이나 동물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개가 중간 혹은 저조한 강렬한 자극의 일회성 노출로 물건, 사람, 혹은 동물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전자목걸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또한 불쾌한 자극을 사용하는 모든 훈련 기술은 개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훈련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불쾌한 자극과 보상의 불일치 및 부적절한 전달을 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훈련사들이 일하는 곳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훈련 기술에 대하여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하여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 8. 압력 괴사

전기 충격 목걸이의 피부 접촉부는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개의 피부에 닿아야 한다. 따라서 목걸이는 꼭 맞아야한다. 그러나 개가 장기간 전기 충격 목걸이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 접촉으로 인한 압력이 피부로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부 손상을 초래한다. 이것은 압력에 의한 '압력 괴사'로 알려져 있으며 전기 자극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ECMA는 전기 충격 목걸이를 처음에는 짧은 기간 동안 착용하고 시간은 점차 늘리며 최대인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의 보호자는 또한 피부 접촉 부위와 목걸이 주변의 피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책임이 있다.

## 9. 억제 체계

개가 격리 목걸이를 사용하도록 훈련할 때 산만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동물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훈련하고 한 번에 한 마리의 개만 훈련하여야 한다. 개가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 신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충분한 자극을 피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격리 울타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격리 시스템을 위해서 혹은 경계 철조망이 움직였다면 새로운 경계를 동물이 배울 때까지 시각적인 경계가 훈련 중 이용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 당국은 전기 충격 격리 시스템이 재산 제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격리와 관련하여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여도 된다.

훈련사가 제어하는 원격 훈련 목걸이를 사용하면 안전하고 의존적으로 격리 상황을 도입 할 수 있다. 격리된 시스템 속에서 훈련사에 의한 정확한 자극에 대한 원격 활성화는 행동으로 촉발되는 격리시스템에 대한 전환을 도울 수 있다.

자극 없이 격리 시스템에서 강제로 개를 떼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짚음 제어 체계

원치 않는 짚는 소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짚는 이유를 이해하면 문제의 원인이 때때로 철회 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짚는 소리가 짚음 제어 목걸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멈춘다.

개가 자극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일부 훈련사는 원격으로 전기 충격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짚음 제어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훈련사는 가장

낮은 강도에서 자극을 시작하고 짚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활성화한다.

짚음 제어 시스템에서 훈련사가 자극을 원격으로 정확하게 활성화하면 행동으로 촉발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걸이가 짚는 소리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거나 개가 자극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면 목걸이를 제거하고 수의사, 수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개 조련사의 추가 조언을 받아야 한다.

#### 11. 고양이 억제 체계

고양이는 일반적이거나 신축성있는 목걸이가 아닌, 수신기가 부착된 분리형 목걸이를 장착해야 한다.

활성화 된 전기 충격 목걸이를 착용 한 후 처음 7일 동안 고양이를 감독 없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활성화 된 목걸이를 처음 착용하고 자극을 줄 때 고양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하며, 심각한 부작용이나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양이가 두려움, 불안, 공격성 또는 도망치는 것과 같이 자극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익숙해하지 않는 경우 제거하고 계속 사용하기 전에 수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고양이에게 리드 채우는 것이 훈련에 포함되는 경우, 고양이는 전기 충격 목걸이를 착용하고 활성화하기 전에 먼저 가슴줄을 착용하고 리드를 따라 걸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리드에 전기 충격기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고양이가 자극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극을 인식하고 예측하며 자극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사가 제어하는 원격 훈련 목걸이를 사용하면 안전하고 의존적으로 격리 상황을 도입 할 수 있다. 격리된 시스템 속에서 훈련사에 의한 정확한 자극에 대한 원격 활성화는 행동으로 촉발되는 격리시스템에 대한 전환을 도울 수 있다.

목걸이를 이용한 훈련을 고양이에게 할 때 산만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동물들과 떨어진 지역에서 훈련하도록 하며 한 번에 한 마리의 고양이만 훈련시켜야 한다.

격리 시스템을 위해서 혹은 경계 철조망이 움직였다면 새로운 경계를 동물이 배울 때까지 시각적인 경계가 훈련 중 이용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 당국은 전기 충격 격리 시스템이 재산 제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격리와 관련하여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여도 된다. 또한 지역 당국에서는 전자적인 격리시스템만으로는 재산, 땅, 자산으로의 구속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역제 체계에서 고양이를 떼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참고 및 추가적인 정보

### 부록 A. 전기 목걸이 사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 유럽연합-현재 법적 체계

현재로서는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전기 충격 목걸이의 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한 EU 법률이 없다. 더욱이 EU의 일반적인 동물 복지법도 없다.

사실, EU는 동물 복지 분야에서 입법 할 일반적인 권한도 없으며 반려 동물 복지에 대한 특정한 권한도 없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대한 조약(TFEU)의 제13조에서 EU가 “연맹의 농업, 어업, 운송, 내부 시장, 연구 및 기술 개발 및 공간 정책을 형성하고 시행할 때” 단지 동물의 복지 필요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도록” 허용한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연합은 “특히 종교 의식, 문화적 전통과 지역 유산 등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입법적 또는 행정적 규정 및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시장 규칙은 잠재적으로 EU가 반려 동물 복지 영역에서 입법하는 이유/정당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동물들이 교역품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 충격 목걸이의 특정한 경우, 다른 국가적 제한 또는 규제가 “내부 시장의 기능에 대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원회가 믿는다면 이론적으로

해당 도구가 EU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의 물개 제품 거래를 금지하는 EU 규정 (동물 복지 문제에 근거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가적 금지에 의해 정당화됨) 경우와 유사하게, 이러한 조화는 전기 충격 목걸이 제조업체 - 또한 전체 EU 시장에 손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고 직시적이지 않으며, 특히 EU 법률에 따라 국가적 제한이 합법적으로 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 충격 목걸이와 같은 상품에 대한 국가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U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조약의 규칙은 '수출입에 대한 정량적 제한과 동등한 효과' (제 34조 및 제35조)로 불리는 일반적 규칙으로 금지된다. TFEU 36조항은 이러한 내부 시장의 자유에 대하여 훼손을 제공하는데도, 그러한 훼손은 제 36 조에 설명된 근거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 근거 중에서도 공공도덕, 공공 정책 또는 공공 보안;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 또는 EU 사법 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일반 대중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추구하는 목표에 비례해야 한다.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건강"이 "동물의 복지"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미래 계획

그러나 현재 EU의 동물 복지에 관한 보호법을 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가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06-2010년 동물복지법 계획의 평가에 관한 최근 자체 계획서에서 유럽의회(EP)는 위원회에 늦어도 2014년까지 EU의 일반 동물 복지 법안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EP의 보고서는 2009년에 위원회가 시작한 동물 복지에 관한 EU 정책의 더 큰 평가를 제공하고 2011년 이후 EU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 범주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규제 항목을 검토 중이다. 더 많은 입법, 연구, 커뮤니케이션, 국제 활동을 포함하여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EU조약의 변경가능성도 있다.

이 평가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2010년 6월 동물 복지에 관한 EU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응답자의 55%가 EU가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1월, 장관 협의회 (EU정부를 대표하는)는 위원회에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개와 고양이 복지에 관한 협의회 결론을 채택했다.

개와 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와위원회 결론은 아마 앞으로 위원회가 EU수준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위해 전기목걸이의 판매 및 사용이 나올 수 있다. DG SANCO위원회는 현재 미래 동물복지 전략 2011-2015에 대한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시민의 협의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올해 12 월에 새로운 전략을 발표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럽의회

1992년 5월 1일,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유럽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동물 보호를위한 특별 전문가위원회(CAHPA)에 의해 유럽 평의회(EU가 아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협약의 적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조항을 확대하거나 강화한다.

제3조(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에서는 “아무도 반려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훈련)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특히 본래 능력이나 힘을 초과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상이나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하는 인위적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고통을 겪으며 건강과 복지에 해로운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서는 안된다.

전기 목걸이 사용을 포함한 이러한 조항의 해석은 회원국마다 다르다.

## 부록 B. 일반적인 원격 훈련 프로토콜의 예

### i) 개에게 전기 목걸이 도입

전기 충격 목걸이는 귀 바로 아래의 목 상단에 편안히 맞아야 한다. 훈련사는 강아지의 털을 통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이의 접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접촉점에 가깝게 개의 털을 쓸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리드줄, 긴 줄, 그리고 테더는 평평한 목걸이나 가슴줄에 부착해야 하며 절대 전기 목걸이에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처음에 훈련사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1~2 주의 기간이 넘을 동안 비활성화 된(꺼진) 전기 목걸이를 착용하는 데 개가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하루 중에 여러 번 목걸이는 개에 착용되었다가 떼여지며 즐거운 경험 (예: 산책, 놀이, 간식 또는 식사 직전)과 관련짓는다. 목걸이는 시작할 때 하루에 8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 걸쳐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해간다. 반려견 주인은 접촉점이 있는 반려견의 피부에 자극이나 염증 징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전기 목걸이를 착용시키고 자주 벗기면 개가 '목걸이에 적응'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것은 개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을 때에만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기 훈련은 최소한의 방해물만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리드 또는 라인이 부착된 평평한 목걸이 (전기 목걸이보다 목에 더 낮게 위치함) 혹은 가슴줄을 사용해야 한다. 줄은 개 뒤에 땅에 끌거나 잡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를 막기 위해 훈련사는 줄을 밟을 수 있다. 7미터 이상의 길이인 라인은 대부분의 훈련에 이상적이지만 25미터까지 긴 라인은 리콜에 유용하다.

훈련사는 개의 행동에 집중하고 자극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원격 송신기를 보지 않고도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는 원격 송신기에 익숙해질 수 있지만 이를 자극과 연관 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극을 활성화 할 때 리모컨이 개를 향해서는 안된다. 일부 관찰력이 있는 개는 ‘원격에 적응’하게 되어 더 이상 자극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ii) 최초인식 수준 결정

훈련사가 원격 송신기의 작동에 익숙해지고 개가 전기 목걸이에 익숙해졌을 때 훈련사는 다음 단계인 개를 위한 올바른 자극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다.

활성화되면 훈련사는 전기 충격 목걸이와 원격 송신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손바닥에 접점이 접촉하도록 전기 목걸이를 잡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낮은 자극 강도에서 시작하여 원격 송신기에 있는 자극 버튼을 누르고 약간의 간지럼이나 따끔따끔한 느낌이 느껴질 때까지 강도를 증가 시킨다. 만약 자극을 느끼지 않은 채 최대 강도에 도달하면, 목걸이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작동 가이드를 다시 참조 해야 한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훈련사는 목걸이를 최저 강도로 되돌려 놓고 스위치를 켜 상태로 개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결정하기 위해 개에게 전기 목걸이를 착용 시킨다. 최소한의 자극 강도는 전기 자극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개마다 다르다. 개에게 어떠한 지시 없이 훈련사는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지켜보며 자극 버튼을 1-2초 동안 눌렀다가 땁니다.

개는 약간의 흔들림을 주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놀란 표정을 보이거나 꼬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눈을 깜박이거나 목걸이 쪽을 보거나 뒷발로 목걸이를 긁을 수 있다.

반응이 없으면 한 단계씩 강도를 증가 시키고 훈련사는 그들이 전기 자극을 인식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개의 최소 인식 단계이다. 이것은 개마다 다르며 날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 최소 인식수준은 각 훈련 세션 전에 결정 되어야 한다.

#### iii)주의력 훈련

개의 최소 인식 수준을 결정한 후 다음 단계는 '나를 따르라' 기술을 이용하여 주의력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어떤 명령도 없이 훈련사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장려하며 개에게 자극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훈련사는 목줄 또는 가슴줄에 7m 라인을 부착하고 개에게 멀어지면서 최소 자극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버튼을 짧게 누른다. 훈련사는 줄에 가벼운 긴장을 주면서 개가 그를 따르도록 장려하고 개가 따르기 시작하자마자, 자극을 멈추고 개가 옆으로 따라왔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개는 그들의 행동과 즐거운 경험 또는 불쾌한 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1초 미만의 시간에 만들기 때문에 자극의 시작과 끝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사는 방향을 바꾸고 개가 따라올 때까지 자극 버튼을 누르고 있다. 개는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빨리 배우고 자극을 피하기 위해 훈련사를 따른다. 훈련사는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 애정, 장난감 혹은 간식으로 보상해준다. 훈련 세션은 약 15분 간 지속되지만 하면 되지만 하루 중에 여러 번 수행 할 수 있다. 개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사가 그들의 주위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항상 전기 충격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개는 자극이 전달되기 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예상하며 자극을 완전히 피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운다. 개는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자극을 피하며 스스로 보상한다.

#### iv) 훈련의 신뢰성 강화

요청 시 주의를 기울이면 자극이 꺼진다는 것을 개가 이해하게 되면, 주의력 훈련은 공고해질 것이다. 더 강한 방해물이 있는 다른 장소에서 더 긴 기간으로 훈련이 공고히 재현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일반화 혹은 '신뢰성 입증'이라고 하며 이를 달성하면 훈련사는 다른 작업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 v)명령 소개

'나를 따르라' 기술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옆에서 걷기' 명령과 유사하므로 다음으로 가르치기 가장 쉬운 기술입니다. 각 ECMA 제조업체와 전문 훈련사는 이를 수행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조언을 추구하고 따라야 한다.

#### vi) 기본 복종 훈련 시작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ECMA 제조업체 및 전문 훈련사는 선호하는 이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개는 활성화된 전기 목걸이가 사용되기 전 훈련사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옆에서 걷기' 명령의 소개에 이어서 많은 훈련사들은 리콜 명령을 다음에 가르칠 것이다. 전기 충격 목걸이는 강한 방해물들의 존재에도 신뢰할 수 있는 리콜 명령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이는 주요 용도이다.

#### vii) 주의력 또는 억제 훈련을 사용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응하는 방법

주의력 훈련은 개가 전기 충격 목걸이의 자극을 느꼈을 때 훈련사에게 돌아오도록 개를 조건화 시킨다. 따라서 자극은 개가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에도 적용하여도 개가 돌아오도록 장려할 것이다. 추격 행동의 관리는 궁극적인 방해와 함께 주의력 훈련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추격에 참여하려는 욕구에 반격하기 위해서 훈련사는 주로 더 높은 강도의 전기 자극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추격 행동을 관리할 때 훈련사는 주의력 훈련에서 억제 훈련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훈련사가 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방해물과 함께 일반화되고 완벽한 주의력 훈련을 완성시켰고 개가 안정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다면 중간 강도 자극을 이용하여 추격 행동을 관리하는 게 자주 가능하다.

억제 훈련의 본질은 개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쫓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는 종종 하나의 자극만을 따르는 것을 배우며 그 수업은 평생 남을 수 있다. 일부 개는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억제 훈련을 계속해서 안 되며 전기 목걸이 사용에 능숙한 전문 훈련사를 찾아야 한다.

개가 전기 자극을 느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훈련사에게 있을 때까지 시야에 있지 않은 개에게 자극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viii) 전기 충격 목걸이에서 개를 떼어내기

연습을 하면, 훈련이 각인되어 많은 개가 더 이상 전기 목걸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기 목걸이를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훈련사는 개를 충격 목걸이에서 떼어 놓기 시작할 수 있다. 전기 목걸이는 산책 등과 같이 주로 착용하는 시점에 때때로 벗길 수 있다. 개가 훈련을 '잊거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목걸이는 덜 자주 착용하고 궁극적으로 착용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개는 유혹과 주의 산만에 빠질 수 있고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끔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훈련사는 올바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목걸이를 사용한다.

ix)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만약 훈련 중에 개가 학습하지 않거나 공격적이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우려가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전기 충격 목걸이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격을 갖춘 개 훈련사나 수의사의 조언을 찾아가야 한다.